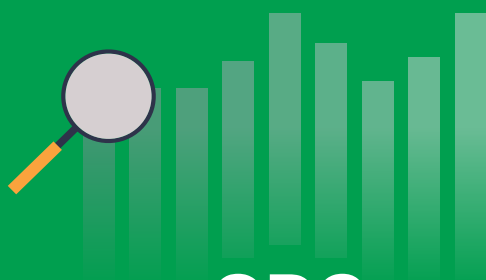


2024
개정판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매뉴얼

참여기업용



SPC

SOCIAL PROGRESS CREDIT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opyright © 2024. CSES
All rights reserved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ntents

제1부 사회성과의 정의	I. 사회성과란	10
	II.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이유	11
제2부 사회성과 측정개요	I. 사회성과 측정원칙	18
	II. 사회성과 측정범위	21
	1. 사명부합성	22
	2. 결과중심성	25
	3. 미보상성	27
	4. 사회성과 측정대상 (취약계층 범위)	29
5.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34	
제3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I. 제품/서비스성과	40
	1. 할인/무료 제공	42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44
	II. 내부공정성과	45
	1. 직접고용	46
	2.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50
	3. 중증 돌봄 대체	52
	III. 외부공정성과	53
	1. 소농거래	54
	2. 공정무역 - 농산물	56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59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61
	5.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63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67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69
	8. 문화예술 자산보호	70
	9. 비영리조직 지원	71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73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74
	IV. 환경성과	75
	1. 재사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77
	2. 재제조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80
	3. 재활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83
	4. 친환경 대체재료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86
	5. 친환경 프로세스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88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90
	부록	별첨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 (2023년)	96



제1부

사회성과의 정의

I . 사회성과란

II .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이유

I.

사회성과란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정의하는 사회성과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사회적가치’이다.

•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즉 지속적인 경영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생산과정, 유통체계, 마케팅 및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

• 직접적으로 창출한 결과(Outcome)

목표집단의 삶의 질 개선, 새로운 기술과 지식습득, 행동의 교정, 사회적 지위향상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이해관계자의 변화

• 사회적가치(Social Value)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을 증진시키는 것

사회적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변화, 수혜자의 삶의 변화, 사회생태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토론되고, 논의되어야 할 개념이다.

II.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이유

1. SPC 배경 및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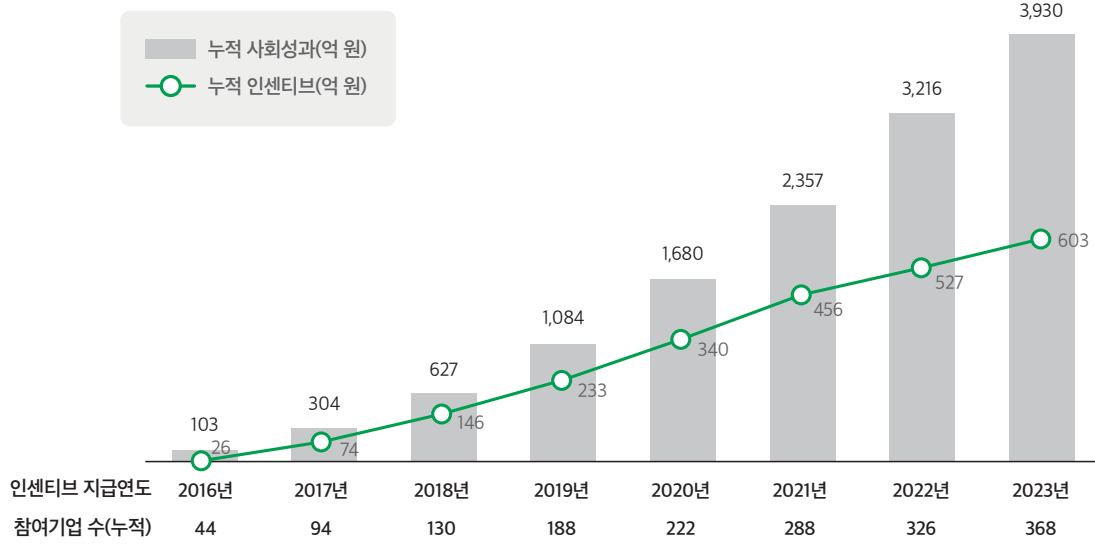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은 시장원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비영리 조직보다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는 기업이 실제 만들어 낸 결과, 즉 사회적가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시장시스템에 가깝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뚜렷한 정의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도록 촉진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센티브를 받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은 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투자자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미래의 현금흐름과 통합하여 인식하게 됨으로써 매력적인 투자처의 발굴이 용이하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기업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평가와 연계하면 사회적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업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시스템은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혁신적인 사회적 창업을 촉진하게 된다. 결국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인센티브에만 머무는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더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선순환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성과인센티브가 탄생하였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새로운 아이디어인 SPC(Social Progress Credit)를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적용한 것이다. 측정과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투자와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즉,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SPC의 궁극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학계, SK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5년 4월 35개 사회적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6년 4월에 44개 참여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에 기반하여 첫 인센티브를 받은 이래 점차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나 지금은 약 400 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성과측정사업이자 민간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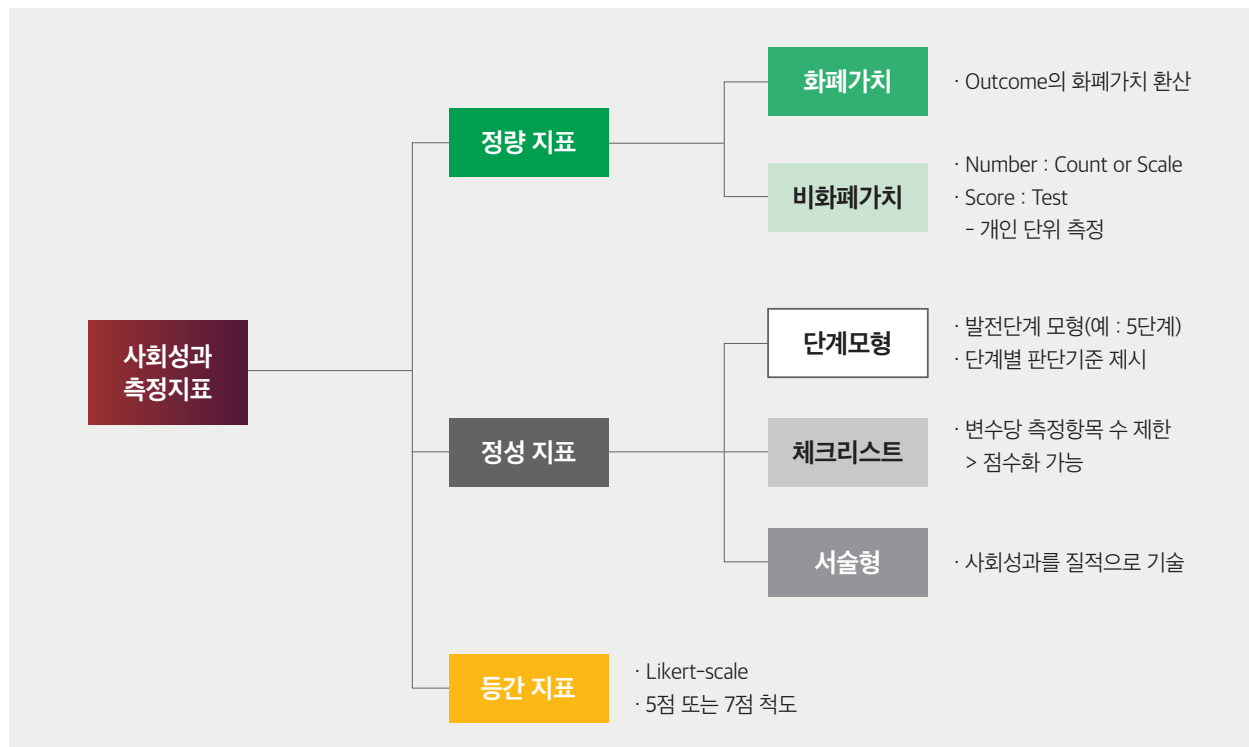
2015년 SPC 프로젝트 론칭 이후, SPC 참여기업들은 총 3,930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으며,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총 603억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림 1-1>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누적 사회성과 및 인센티브

2. 화폐화 방식의 사회적가치 측정

사회적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조직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지표들을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또한 기업의 미션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이 외부 기관의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성과 수준을 판단하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은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유형에 따라 <그림1-2>와 같이 정량/정성적인 다양한 측정 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이 중 정량적 지표로 측정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그림 1-2> 사회성과 측정지표 유형

첫째, 다종다양한 사회성과의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은 단일 미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용, 환경, 교육, 사회복지 등 각기 다른 영역의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모든 측정 지표는 측정단위가 동일하고, 각 지표마다 비교 값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성격이 다른 다양한 지표들을 ‘화폐가치’라는 단일한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사회성과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와 통합할 수 있다.

사회성과가 화폐가치로 측정되면, 향후에는 사회적가치가 제품/서비스 또는 기업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성과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내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나 투자기회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측정의 반복 적용이 용이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화폐가치 환산의 기본 원칙과 표준식에 따라 사회성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성과 화폐단위 측정방식은 직접적으로 사회성과를 재는 방법은 아니다. 화폐단위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인과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크기에 대한 정량·정성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을 추정함으로써 성과의 단위를 일치시켜 다양한 유형의 사회성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부

사회성과 측정 개요

I. 사회성과 측정원칙

II. 사회성과 측정범위

1. 사명부합성
2. 결과중심성
3. 미보상성
4. 사회성과 측정대상 (취약계층 범위)
5.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I.

사회성과 측정원칙

1. 이해관계자 회계 원리

측정원칙: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

기업 활동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발생시킨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 ‘사회’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집합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성과란 기업 활동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발생시킨 편익과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비용을 뺀 값과 동일하다. 이해관계자 회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자별로 계정(account)을 만든 후, 발생한 편익과 비용을 계정에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한다. 측정과정에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합의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2. 보수성의 원칙

측정원칙: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

명확한 기준값^{proxy}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성과로 인정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사용

사회성과 측정은 일종의 사회적 회계로서 사회적가치의 과대 계상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에 서는 명확한 기준값^{proxy}이 있는 경우만 사회성과로 인정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성과가 있는 경우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최소기준만을 적용한다. 최소기준이라 함은 ①타당하고(평균값 혹은 가장 보수적인 값) ② 신뢰성 있는(국가통계 등) 데이터를 의미한다. 기업과 측정 전문가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준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 전문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의 혁신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사회문제와 그 목표집단과 관련된 사회성과만 인정하며, 일반적인 소비자 후생은 사회성과에서 배제한다. 단순히 제품/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의 가격인하분이 사회성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장벽으로 인해 제품/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했던 목표집단(ex. 경제적 취약계층)과의 거래만이 사회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영리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의 외부 효과인 사회적 편익도 사회성과에서 배제한다.

3.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측정원칙: 현실적인 시장가격^{baseline}을 추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준거시장에서의 가격을 추정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화폐화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와 동일한 가치물(價物)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 시장가격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물이 없다면, 그 가격을 새롭게 추정해야 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표 2-2>와 같이 크게 가격에 기반한 추정방식과 비용에 기반한 추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시장가격이 존재한다면 즉각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생산 활동과 유사한 생산 활동을 하는 실제 공급자들의 공급의사가격이나 구매자의 지불의사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조사는 조사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통계 데이터베이스 등 추정 값의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추정방식의 적용에 있어서도 적용순위를 두어 가장 타당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추정한다.

<표 2-1> 준거시장에 근거한 가격추정방식

구분	가격추정방식	내용	적용순위
가격 기반	일반시장가격 (average p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 	1
	공급의사가격 (willingness to supp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통상 기존의 수익률 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 등에 대한 국가/산업 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2
	지불의사가격 (willingness to p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격으로 간주 	3
비용 기반	대체방식 비용 (alternative c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었을 경우, 기존의 솔루션에 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4
	추가투입비용 (additional cost as minimum p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가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제한적용

II. 사회성과 측정범위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측정원칙에 따라 사회성과의 측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

- **사명부합성**
기업의 사회적 사명^{mission}과 핵심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사회성과
- **결과중심성**
조직 활동의 결과^{outcome}로서의 사회성과
- **미보상성**
가격기구와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은 미(未)보상 사회성과

이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원칙의 일반화 및 표준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성과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본 제도의 성과측정범위에서 제외될 뿐 사회적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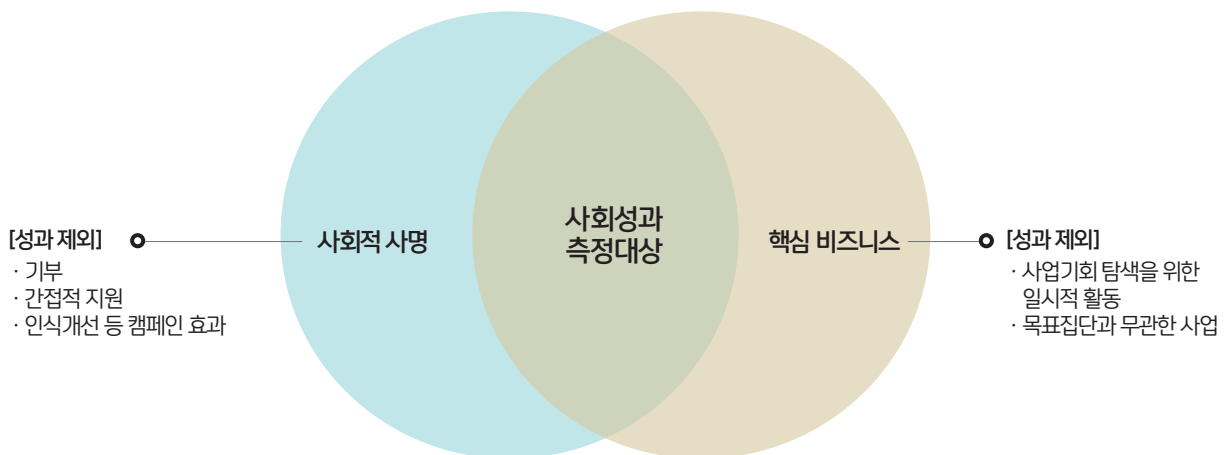
1. 사명부합성

측정범위 : 기업의 사회적 사명^{mission}과 핵심 비즈니스와 관련된 직접적 사회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성과만 측정하며, 부수적, 간접적 성과는 배제

1) 원칙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지표 위주로 측정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성과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개별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보고서와 달리,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지표 위주로 측정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성과만을 인정한다.



<그림 2-1> 사회성과 측정대상

기업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면서 핵심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된 사회성과만을 보상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성과는 ① 사회적 사명에서 정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야 하며, ② 목표집단 또한 사회적 사명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해야 하고, ③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종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사회문제 해결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

기업의 사회적 사명^{mission}과 핵심 비즈니스는 주로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업종을 통해 확인한다.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창출된 성과는 부수적 성과로 보아 측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형식이 '정관'이 아니더라도 '인증받은 정기(임시, 주주)총회 이사록',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과 같은 기업의 미션이 공식적인 목적으로서 명시된 문건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법인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문건의 내용으로 측정여부를 판단한다.

(1) 정관에 광범위한 목적을 명시한 경우

정관에 업종을 명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등의 광범위한 목적을 명시한 경우,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회적 사명은 명시된 문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성과가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목적)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업종) 공란

예를 들어, 목적과 업종이 위와 같이 작성된 경우에는 환경기술기업/돌봄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도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환경성과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형 기업이 재활용컵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도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환경성과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목적이 명시되지 않고 업종만 명시된 경우

기업이 규정하는 사회문제와 기업의 사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된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과만을 측정한다.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
(업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설비자료
2. 부동산임대업
3. 교육서비스업
4. 각 호와 관련된 유통사업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기업이 위와 같이 정관에 취약계층 고용 및 장애인 돌봄 등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핵심 비즈니스라 볼 수 없고, 해당 성과는 측정하지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에게 주거서비스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2호, 3호에 해당되는 핵심 비즈니스라고 판단하며, 제품/서비스성과(前 사회서비스성과)는 측정할 수 있다.

(3) 예외: 사회성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

① 사회적 사명과 무관한 단순 기부

사회적 사명과 무관한 단순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은 측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 사회적기업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에 참여한 경우: 측정 X
-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기부한 경우: 측정 O
- 사회문제 해결이나 목표집단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이들을 위한 활동 단체에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삼고, 기부판매 결합형 사회적기업(ex. 탐스슈즈, 워비파커)이나 기부형 클라우드 펀딩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부와 연계된 경우: 측정 O

② (사회적 사명과 별개인) 보편적인 기업윤리를 따르는 기업 활동

사회적 사명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이 아닌 환경윤리, 법률준수, 차별금지 등 기업 일반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윤리를 따른 활동의 성과는 사회성과의 측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 '취약계층 직접 고용'을 기업의 사명으로 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요구되는 기업윤리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다거나 에너지 소비를 줄인 경우: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측정 O, 환경성과 측정 X
- 환경 관련 제품 생산과 확대를 사명으로 하는 기업이 직원 일부를 취약계층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측정 X, 환경성과 측정 O
- 기업이 정관 등에 '취약계층 고용'과 '환경 개선'을 명시적인 사명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환경성과 모두 측정 O

③ 일시적인 부가사업이나 이벤트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필요로 인해 '추가된 활동이나 사업'은 측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규로 개발한 상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개최한 이벤트에서 무료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기법이나 기술을 동종의 다른 영세기업에 전수하기 위해 컨설팅이나 강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사회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사회공헌 활동 또는 기여

본 제도는 단일 사회적기업을 사회성과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펼치는 사회사업이나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회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서서 협의회, 협회, 위원회, 지역협의체 등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낸 사회성과도 측정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협회조직에 기여한 성과도 측정대상이 아니다.

⑤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성 활동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때로는 소비자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특정 사회운동^{advocacy}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이나 법률,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변화가 반드시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어난 성과임을 입증하는 것과,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한 결과^{outcome}라기 보다 운동 또는 캠페인의 성격의 영향^{impact}에 가깝고 사회성과 측정대상이 아니다.

<표 2-2> 사회적 사명 및 핵심 비즈니스 부합성 판단에 따른 예외 사례

사회적기업 활동	내용	사업 부합성	비즈니스 부합성
사명과 무관한 단순 기부	핵심 미션과 상관없는 현금 또는 현물의 기부성과	×	×
보편적인 기업윤리를 따르는 기업 활동	기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윤리 추구 활동의 성과	×	△
일시적인 부가사업이나 이벤트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관계가 적고 사업화되지 않은 일시적인 활동의 성과	△	×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사회공헌 활동	기업 조직 활동이 아닌 직원 일부의 사회공헌 활동 또는 협회 차원의 활동성과	△	×

2. 결과중심성

측정범위 : 조직 활동의 결과^{outcome}로서의 사회성과

기업 활동을 통한 이해자의 직접적인 변화를 사회성과로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outcome)만을 측정

1) 배경이론

경제적,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를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논리모형^{logic model}은 사회사업 분야에서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서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가치창출과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제시한다.

- 투입^{inputs}

조직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및 활동을 유인하는 규범이나 요구 등

- 활동^{activities}

가치창출을 위한 조직의 활동. 사회적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활동은 물론 조직관리 및 외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모든 경영활동

- 산출^{outpu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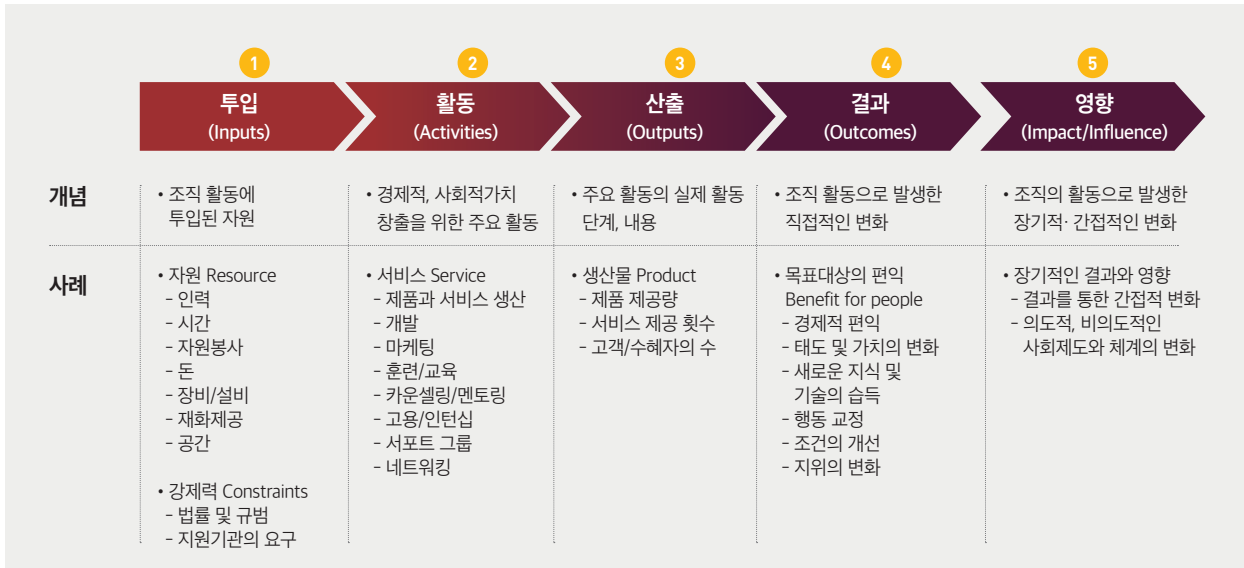
조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조직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로서 보통 횟수, 시간, 참여인원, 제공량 등 규모^{volume} 단위로 기술

- 결과^{outcomes}

조직 활동을 통한 목표집단의 환경, 태도, 지위 등의 변화와 그 변화의 정도. 통상 목표집단이 얻는 긍정적 이익인 편익^{benefit}

- 영향^{impact/influence}

조직 활동을 통한 목표집단의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변화, 또는 목표집단 외의 타 집단이나 환경에 대한 파생적인 효과를 의미하며, 사회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포함



<그림 2-2> 가치창출과정의 논리모형

2) 원칙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최종적으로 창출한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결과^{outcome}를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과 추가적인 비용의 투입, 희생과 헌신,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는다. 사회성과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실제 변화, 즉 목표집단의 편익만을 측정대상으로 본다.

영향^{impact}은 중장기적인 결과로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측정하더라도 기업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해당 기업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대상이 아니다.

3) 적용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을 고용한 '결과^{outcome}'로서 장애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생활의 변화는 측정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거나 장애인 고용이 확산되는 등의 영향^{impact}은 측정이 어렵다. 또한 영향은 다른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상관성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영향에 대한 측정은 배제하고 누구나 수용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과만을 측정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성과 유형	정의	성과지표의 예시
과정 (Process)	사회적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성과	장애인 고용 및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산출 (Output)	사회적기업 생산 활동의 결과물과 관련한 직접 성과	장애인 고용 인원 수
결과 (Outcome)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수혜자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난 변화	고용된 장애인에게 일어난 생활의 변화
영향 (Impact)	사회적기업 활동의 결과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확산

<그림 2-3> 논리모형에 따른 사회성과 지표 사례

3. 미보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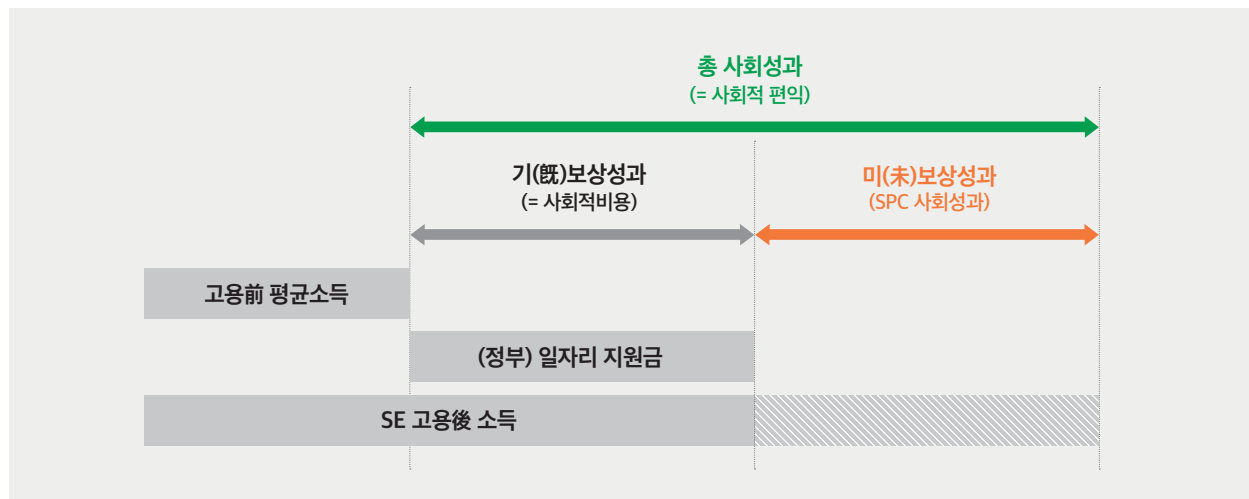
측정범위: 가격기구와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은 미(未)보상 사회성과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 중 가격기구 또는 제도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보상 성과만을 측정

1) 원칙

(1) 미보상 성과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이미 기존 시장에서 매출 및 지원금의 형태로 가격화되어 보상이 끝난 사회성과는 배제하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되지 못한 사회성과만을 인정한다.



<그림 2-4> 내부공정성과 사례로 보는 미보상 성과의 개념

(2) 단년도 성과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회계를 위한 사회성과 측정도 1년 단위로 측정한다. 즉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회성과를 측정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성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 즉 목표집단의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추어 성과를 인정한다.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형 사업(주로 위탁용역사업)의 성과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한다. 첫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연도에 해당 성과를 일괄 측정한다. 둘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하며, 이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성과인 경우, 측정대상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성과에 반영한다.

2) 적용

(1) 기본원칙: 측정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성과를 측정한다.

(2) 2개년도 이상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형 사업인 경우의 측정기간

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야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사례) 특정 공간을 공공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자산으로 만든 성과

2016년 5월에 공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장소선정 등 기획 착수하여,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2017년 5월에 사업종료하여, 같은 해 6월부터 시민들이 실제 해당 공간에서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 성과 측정 기간

2017년 6월~2017년 12월까지의 공공문화공간의 시민이용편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016년은 성과측정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② 사업 추진 중에도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하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가능한 사업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2016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착수, 사업기간 중 다양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취약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을 증진에 기여하며, 2017년 5월에 사업종료한 경우

※ 성과 측정 기간

2016년 5월~2016년 12월까지의 주민소득증대성과(2016년 성과에 반영)
2017년 1월~2017년 5월까지의 주민소득증대성과(2017년 성과에 반영)

4. 사회성과 측정대상 (취약계층 범위)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 범위를 준용하여 측정대상으로 정한다.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 측정대상 확인을 위해 기업에서는 취약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취약유형	정의	제출서류	비고
[제1호] 일반저소득자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택1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	• 공문, 사업명, 주최기관,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본, 수급내역
		수급자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차상위계층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 국내 월평균 근로소득 60% 이하로 저소득자 여부 판단 • 주소,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유선 요청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제2호]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 자	택1	주민등록증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운전면허증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홈택스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택1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복지카드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상이군경회원증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회에서 발급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장애진단서(전문)	• 의료기관 문의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가려서 제출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택1	성매매피해자동의서	• 주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입소사유 가려서 제출
		보호처분결정문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기관, 연락처, 가해자,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1366 상담기록 or 입소확인증	• 기관, 연락처, 가해자,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의료급여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부양가족 내용 가려서 제출

<p>[제5호]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p>	택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발급 (www.ei.go.kr)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청년취업아카데미 이수증	
		새일센터 프로그램 신청서	
<p>[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보호대상자)</p>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청에서 발급
<p>[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p>	택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보호비용변경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가려서 제출
		보호처분결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처, 가해자정보,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상담시설 상담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처, 가해자정보,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려서 제출
<p>[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 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p>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소 가려서 제출
<p>[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p>	택1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F-6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화한 경우 3년 이내만 인정 사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p>[제10호] 갱생보호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p>	<p>해당자</p>	<p>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p>	
<p>[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p>	<p>택1</p>	<p>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보호비용변경신청서 보호처분결정문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가려서 제출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p>[제12호] 기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 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p>	<p>해당자</p>	<p>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p>[제12호] 기타-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해당자</p>	<p>수용증명서, 출소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소·구치소의 민원실 방문 혹은 • 법무부 형사사법포탈(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칭호번호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소년원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p>	<p>해당자</p>	<p>소년퇴원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방문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퇴원사유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보호관찰 청소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p>	<p>해당자</p>	<p>보호관찰기관 발급 증명서</p>	
<p>[제12호] 기타- 노숙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p>	<p>택1</p>	<p>시설확인증 자활근로자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 고용보험사이트 발급 (www.ei.go.kr)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세대주 성명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p>	<p>택1</p>	<p>지원프로그램 신청서 진단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중독자 치료병원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소견, 질병분류기호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택1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가입자,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 주소, 진단명, 상병기호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제12호] 기타- 여성가장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택1	가족관계등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통반장확인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등 																														
[제12호] 기타- 난민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해당자	난민인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 거점기관 문의 [전국 난민심사 거점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민관서</th> <th>난민심사 거점 기관</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td> <td>→ 서울출입국·외국인청</td> <td>02-2650-6399</td> </tr> <tr> <td>인천 (출장소) 안산</td> <td>→ 인천출입국·외국인청</td> <td>032-890-6300</td> </tr> <tr> <td>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김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td> <td>→ 부산출입국·외국인청</td> <td>051-461-3091</td> </tr> <tr> <td>대구 (출장소) 구마, 포항</td> <td>→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53-980-3505</td> </tr> <tr> <td>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td> <td>→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62-605-5207</td> </tr> <tr> <td>제주</td> <td>→ 제주출입국·외국인청</td> <td>064-723-3494</td> </tr> <tr> <td>여수 (출장소) 광양</td> <td>→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61-792-1139</td> </tr> <tr> <td>화성외국인보호소</td> <td>→ 화성외국인보호소</td> <td>031-8055-7000</td> </tr> <tr> <td>청주외국인 보호소</td> <td>→ 청주외국인보호소</td> <td>043-740-7512</td> </tr> </tbody> </table>	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민관서	난민심사 거점 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399	인천 (출장소) 안산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300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김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091	대구 (출장소) 구마, 포항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05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207	제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23-3494	여수 (출장소) 광양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792-1139	화성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0	청주외국인 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043-740-7512
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민관서	난민심사 거점 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399																															
인천 (출장소) 안산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300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김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091																															
대구 (출장소) 구마, 포항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05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207																															
제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23-3494																															
여수 (출장소) 광양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792-1139																															
화성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0																															
청주외국인 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043-740-7512																															
[제12호] 기타-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택1	보호종료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발급 •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인적사항 가려서 제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대리인정보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해당자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퇴소사유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조손가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	택1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주민센터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서 발급 																														
		관계기관 확인서																															

<p>[제12호] 기타-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p>	<p>해당자</p>	<p>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 등</p>	
<p>[제12호] 기타-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 저신용자: 신용등급7~10등급</p>	<p>해당자</p>	<p>신용등급조회서류</p>	
<p>[제12호] 기타- 학교폭력 피해자</p>	<p>택1</p>	<p>해당기관 확인서</p>	
		<p>관계기관 상담신청서</p>	
		<p>조치결정통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학교, 조치원인, 담당자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가정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p>	<p>택1</p>	<p>사건사고사실확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p>보호비용변경신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p>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p>관계기관 확인서</p>	
<p>[제12호] 기타-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p>	<p>택1</p>	<p>대상 프로그램 상담, 지원 신청서</p>	
		<p>관계기관 확인서</p>	
<p>[제12호] 기타-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p>	<p>택1</p>	<p>산정특례 대상자 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가입자,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 주소, 진단명, 상병기호 가려서 제출
		<p>관계기관 확인서</p>	

5.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사회적기업의 사명^{mission}이 무엇인지에 따라 ①삶의 질 개선,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②플라스틱, 대기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사회적가치가 창출되는 방법에 따라 ①제품·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제품/서비스성과(前 사회서비스성과), ②취약계층 고용, 취업지원 등 기업 내부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③취약생산자/소농 등의 사회적기업 외부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외부공정성과(前 사회생태계성과)로 구분한다.

<표 2-3>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사회적기업의 사명		
사회성과 창출 방법	사회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제품/서비스(product)	I. 제품/서비스성과(前 사회서비스성과) 1. 할인/무료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IV. 환경성과 1. 재사용 2. 재제조 3. 재활용 4. 친환경 대체재료 5. 친환경 프로세스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공정(process)	II.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1. 직접고용 2. 경과성 일자리 3. 중증 돌봄 대체	
	III. 외부공정성과(前 사회생태계성과) 1. 소농거래 2. 공정무역 - 농산물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5.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7. 취약생산자 추가 거래 기회 제공 8. 문화예술 자산보호 9. 비영리 조직 지원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 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는 제품/서비스, 내부공정, 외부공정, 환경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제품/서비스성과(前 사회서비스성과)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광의의 제품과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의미하며, 준거시장의 가격과 비교하여 제공 가격과의 차이를 이해관계자의 편익으로 측정한다.

•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탈북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 효과를 의미하며 주로 근로소득 증대분으로 측정한다. 근로소득 증대분은 고용된 취약계층의 개선된 삶의 질을 의미하는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와 정부의 관련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 등 사회적 가용예산의 증대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 외부공정성과(前 사회생태계성과)

외부공정성과는 사회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충분하고 적절한 거래조건이나 거래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한 생산자/소농 등을 사회적기업이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과이다. 또한 사회공공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시민자산을 보존하고 확대한 성과도 이에 포함된다.

• 환경성과

환경성과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그 생산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줄이거나 환경오염의 발생을 저감시킨 성과를 의미한다. 소비를 줄인 자원의 가치, 그리고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을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측정한다.

1) 기업의 고유 미션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성과 영역

사회성과 영역은 개별 기업의 제품/서비스 특성, 산업 유형, 조직 형태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간병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일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기업은 높은 품질의 간병서비스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회성과를 측정할 때, 첫 번째 기업은 내부공정성과를, 두 번째 기업은 제품/서비스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두 성과 모두를 측정할 수 있다.

2) 사회성과 영역 간 비중첩성, 비관계성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사회성과 영역은 서로 중첩되지 않으며, 성과영역 간에 가치 우열이나 인과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제품/서비스성과가 환경성과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내부공정성과가 존재해야만 제품/서비스성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사회성과 영역 탐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4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분한다.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성과가 다양하면, 두 개 이상의 영역과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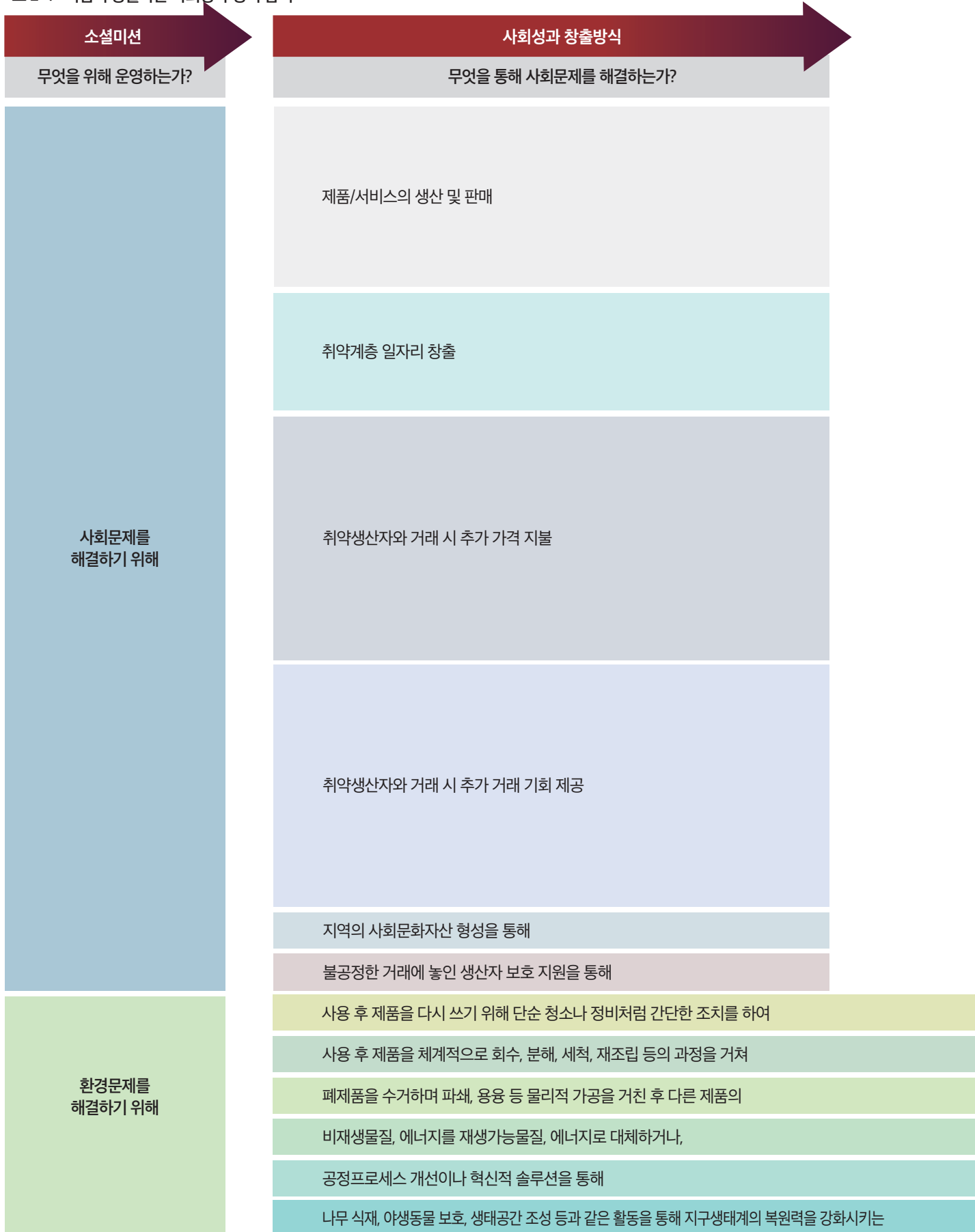
기업의 소셜미션, 사회성과 창출방식, 비즈니스 모델, 목표집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사회성과는 어느 성과 영역에 해당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자.

첫번째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목적, 즉 소셜미션이 불평등 해소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플라스틱 쓰레기나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무엇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 영역을 구분한다. 사회적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장애보조기기처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라든지,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 **제품/서비스성과**) 또는 취업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내부공정성과**) 공정무역이나 농산물 직거래처럼 공정한 시장 거래를 형성하거나 공공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하기도 한다(⇒ **외부공정성과**).

아래 <표 2-4>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해당하는 영역과 세부지표를 스스로 탐색해볼 수 있다.

<표 2-4>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 영역 탐색



비즈니스 모델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사회성과 영역 및 지표
어떤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I. 제품/서비스성과 - 1. 할인/무료 제공
제품/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무료/할인하여 판매한다면>	I. 제품/서비스성과 - 1. 할인/무료 제공
기존 시장에 없는 제품/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한다면>	I. 제품/서비스성과 - 1. 할인/무료 제공
가격 및 원가가 통제된 시장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비용 투입한다면>	I. 제품/서비스성과 - 2. 추가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직접 고용한다면>	II. 내부공정성과 - 1. 직접고용
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과 이직을 지원한다면>	II. 내부공정성과 - 2. 경력성 일자리
중증장애인 자립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면>	II. 내부공정성과 - 3. 중증 돌봄 대체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 유통을 확대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1. 소농거래
해외 현지 농가에게 적정가격 지불로 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2. 공정무역 - 농산물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기회 제공을 위해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5. 클라우드펀딩
문화예술인과 거래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8. 문화예술 자산보호
동일한 미션을 가진 비영리조직에 기업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기부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9. 비영리조직 지원
해외 현지 생산자에게 적정가격 지불로 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공정여행으로 해외 현지 생산자와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4. 공정여행
공정여행으로 국내 현지 생산자와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7. 취약생산자 추가 거래 기회제공
취약생산자에게 수익이 창출되도록 구매를 하거나,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면>	
공공부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특수직 근로자들과 공정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한다면>	IV. 환경성과 - 1. 재사용
새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IV. 환경성과 - 2. 재제조
재료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면>	IV. 환경성과 - 3. 재활용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만든다면>	IV. 환경성과 - 4. 친환경 대체재료
제품생산에 쓰이는 재료나 에너지를 줄인다면>	IV. 환경성과 - 5. 친환경 프로세스
사업을 한다면>	IV. 환경성과 -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제3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I. 제품/서비스성과

1. 할인/무료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II. 내부공정성과

1. 직접고용
2.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3. 중증 돌봄 대체

III. 외부공정성과

1. 소농거래
2. 공정무역 - 농산물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5.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8. 문화예술 자산보호

9. 비영리 조직 지원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IV. 환경성과

1. 재사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2. 재제조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3. 재활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4. 친환경 대체재료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5. 친환경 프로세스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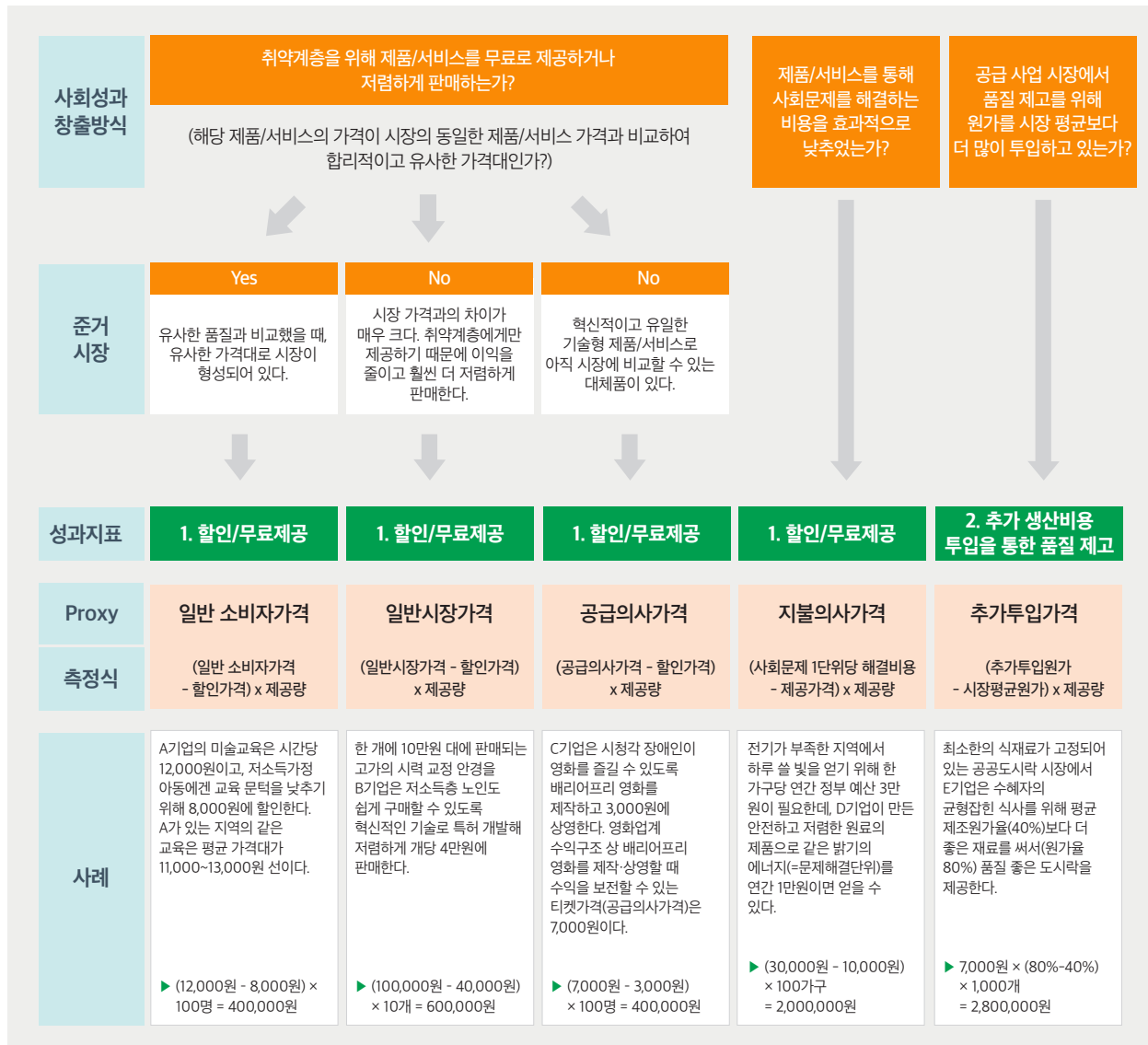
제품/서비스성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조직이다. 기존 시장에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비싸서 가난한 이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이거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기업은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이익 감소로 기꺼이 감수하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서비스성과란 이처럼 기존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1. 할인/무료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로 측정할 수 있다.

<표 3-1> 제품/서비스성과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세부 지표

비즈니스 모델	세부 지표
일반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할인/무료 제공	1. 할인/무료 제공
시장 배제 취약계층을 위해 특화된 제품/서비스 생산하여 제공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일반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취약계층에게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서비스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의 사례를 세부지표별로 소개한다. 다음 <그림3-1>을 통해 성과창출방식과 준거시장에 따른 세부지표와 비교가격 proxy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1> 제품/서비스성과 성과 창출 유형에 따른 비교 가격 기준 탐색

1. 할인/무료 제공

제품/서비스	할인/무료 제공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할인/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위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혜자가 취약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 2) 제공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p.96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시장가격 (baseline)	일반시장의 귀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대한 조사는 타당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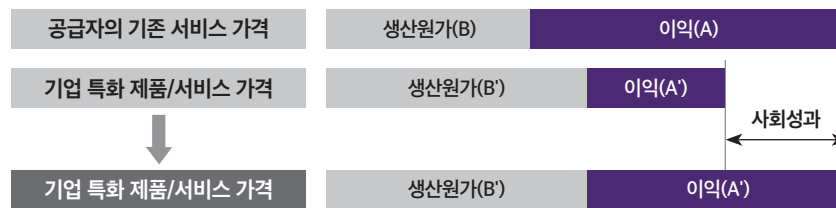
지표개요	다음의 세가지 경우 해당 성과 (1) 동일품질 가격할인: 일반 시장서비스와 동일한 내용과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목표집단(취약계층)에게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하여 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시장 배제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제품/서비스 제공 (3)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측정산식	$(\text{일반 시장의 제품/서비스 제공가격} - \text{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제공가격}) \times \text{총 할인/무료 판매량} - \text{해당 제품/서비스 관련 외부지원금}$

<표 3-2> 가격추정방식 및 적용순위

구분	가격추정방식	내용	적용 순위
가격기반	일반시장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 	1
	공급의사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통상 기존의 수익률 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 등에 대한 국가/산업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2
	지불의사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가격으로 봄 	3
비용기반	대체방식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었을 경우, 기존의 솔루션에 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4
	추가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과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제한 적용

Proxy

- (1) 일반시장가격
 -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산정
 - '보수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용할만한 평균가격 혹은 낮은 시장가격을 적용
- (2) 공급의사가가격
 - 특화 제품/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비용+기존 서비스의 적절한 이익 > 공급의사가가격 추정



<그림 3-2> 공급의사가가격 추정 원리

- (3) 지불의사가가격
 - 사회적기업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기존의 공공조직이나 NGO의 방식 대비 효율적인 경우
 - 기존의 정부, 공공조직, NGO 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하고 있는 예산으로 추정함
 - 개별소비자의 지불의사가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객관성의 문제로 인해 적용하지 않음

참고사항

- (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및 수혜대상의 취약계층 증빙자료 필요
 (2) 단,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이 발행한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서비스 제공량 인정(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내 취약계층 유형 및 명수 세부 기입 필요)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제품/서비스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목표집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혜자가 취약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 2) 제공내역 3) 생산비용 투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p.96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시장가격 (baseline)	일반시장의 귀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원가에 대한 조사는 타당한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적인 생산비용 투입으로 품질을 높인 성과(동일 가격 대비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로 수혜자의 편익을 증진시킨 성과)
측정 산식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제공 원가율 - 일반 시장의 제품/서비스 원가율) ×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제공가격 × 총 판매량 - 해당 제품/서비스 관련 외부지원금
Proxy	(1) 평균적인 원가(원가율)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가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참고사항	추가투입비용 인정 Case (1) 가격/원가 통제로 인해 일반 시장의 차선 서비스 보다 원재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결식아동을 위해 도시락의 제조 원가율을 높인 도시락 사회적기업(단, 추가 투입 원가율이 입증된 경우여야만 함) (2) 일반 시장의 서비스에는 없는 재화/서비스를 부가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요양환자를 위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여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단, 품질 제고가 입증된 경우여야만 함) (3) 대인서비스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를 업계 평균보다 더 지급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경우: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업계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사회적기업(단, 품질 제고가 입증된 경우여야만 함)

II. 내부공정성과

장애인, 고령자, 노숙자 등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을 '노동취약계층'이라고 한다. 내부공정성과란 노동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편익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이 내부공정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직접고용

사회적기업이 노동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

•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사회적기업이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훈련, 적극적 취업 알선 및 연계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의 다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단, 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부공정성과 -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성과로 측정함)

• 중증 돌봄 대체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자립 혹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

1. 직접고용

내부공정	직접고용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소셜미션	귀사에서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목표집단	고용한 근로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취약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근로자의 취약계층 증빙자료*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2. 내부공정성과 p.100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직접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 증진 성과
------	------------------------------

(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킨 성과

(2) 측정산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취약계층의 근로소득 -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의 근로소득) x 근무개월 수 - 고용 관련 외부지원금

노동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채용

사회적기업의 내부공정성과

노동취약상태의 소득수준 (Proxy) **실제 노동상태의 소득수준 (실제 지급급여)**

실업상태를 포함한 해당 계층의 평균 소득 취업 후 실제 소득

<그림 3-3> 사회적기업의 내부공정성과 측정원리

주요 개념 및 범주

(1) 노동취약계층: 심신의 건강상태, 경제수준, 학력 및 기술 등을 이유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기 어렵거나, 노동시장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취약계층 준용)

<표 3-3> 노동취약계층의 분류

일반저소득자(20세 이상 ~ 55세 미만)	장애인
일반저소득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자를 의미함. 연령은 20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제한함. 이 외의 연령은 청소년,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구분함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장애인의 내부공정성과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1~2급 및 3급 중복), 경중장애(3~6급)를 구분하여 적용함. 장애유형은 주장에 따라 판단함
준고령자(만 55세~ 65세 미만)	고령자(만65세 이상)
노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은퇴 시점을 지남으로써 노동을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자를 의미함	고령으로 인해 체력이 약화되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자를 의미함
기타 학교 밖 청소년	기타.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소년원 퇴소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고 자립의 필요가 있는 청소년도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
기타 노숙인	기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쉼터나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함	경력단절여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호피해자, 출소자, 청년장기실업자 등을 포함하며, 일반저소득층에 준한 취약계층으로 측정함

- 노동취약계층 유형 중 2~3개 유형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근로자는 더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준하여 측정
- 근로소득 증가분: 취약계층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분,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 절감분, 세수(소득세) 확대 효과 모두 포함

Proxy

(1) 사회적기업 취업 이후의 근로소득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근로소득
 = 기본급 및 성과급 + 소득세/주민세 + 4대보험(개인 및 사업자 부담금) + 급여성 복리후생비

<표 3-4> 사회적기업 취업 이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및 성과급	소득세/주민세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근로소득 • 기본급: 분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성과급: 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보통기업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함. 소득세/주민세는 우리 사회의 조세 편익으로서 사회 성과로 간주함
4대 보험(개인 및 사업자 부담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소득에 기반한 연금 및 보험제도로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과 사업자 부담금으로 나누어 징. 소득 발생에 따라 보험 및 연금의 편익이 발생하므로, 사회성과로 간주함	• 종업원 또는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교육비 보조금) • 종업원의 진료비 부담액 • 불우종업원에 대한 생계비 또는 학비 보조금 • 종업원에 대한 법인 부담금 이외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 자기운전보조수당 중 월 20만원 초과액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 비용 상당액(여비교통비) 초과액

- (2)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 근로소득의 추정
- 신뢰성과 측정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근속년수,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평균 소득 수준을 활용함. 특히, 노숙인은 근로 의욕이 현저히 낮고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 관련 중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으로 proxy를 설정함
- 취약계층 유형별 취업 전 근로소득: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국가통계자료를 통해 평균 소득수준을 도출하며, 모든 취약계층 유형은 본 자료를 기준정보(proxy)로 적용할 것을 기본으로 함. 다만 본 자료를 통해 나온 기준정보 수치가 없거나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정보로 준용함
 - 최저시급: 법정 최저시급으로, 통계값을 통해 근로소득을 도출했다라도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기에 기준정보가 되는 수치의 최저치는 최저시급에 맞춤. 다만 장애인과 노숙인은 법적으로 최저시급 적용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해당 기준에서 제외함
 - 직전 근로소득: 만약 근로자 본인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기 전 소득이 없었거나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았음을 소득증명원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수용함

<표 3-5> 경제활동인구 구성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취업자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주 임금, 급여, 수수료, 이익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모든 사람,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임금근로자	개인, 가구,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사람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는 달리 특정한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일용직: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
비임금근로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프리랜서 등 일정 형태의 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
종업원 없는 자영업:	종업원을 두지 않고 고용주 단독으로 운영되는 자영업
종업원 있는 자영업:	고용주 외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노동을 제공하나 급여가 없거나 급여의 정함이 없는 사람
실업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였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 일자리만 있으면 즉시 취업을 가능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Proxy

<표 3-6>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 평균 소득 Proxy 산출 시 취약계층 유형별 적용되는 기준 (사회적기업 노동시장 진입 대상)

적용기준	취약계층 유형		일반 저소득자	준고령자 (만60~64세)	고령자 (만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노숙인	자립준비 청년	학교밖 청소년	저개발국 근로자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탈북민 등)
	취업자	비취업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	○	×	○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	×	×	×	×	정신장애 유형 평균 소득	최저임금		
			임시직	○	○	○	○	○				
			일용직	○	○	○	○	○				
	비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 자영업	○	○	○	○	○				
			종업원 있는 자영업	×	×	×	×	×				
			기타	○	○	○	○	○				
실업자	○	○	○	○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사회성과 감가/일몰 기준 적용여부 (채용 후 5년(60개월)초과 시)	감가*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없음	감가	일몰	일몰	기준연령 이후일몰	일몰	감가		

* 예외적 적용

경력단절여성 및 장기청년실업자 : 3년(36개월) 후 일몰

참고사항	<p>(1) 노동취약계층 대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취약계층은 경제적 필요가 높은 대상일 것을 전제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 - 중위소득 150%: 내부공정성과의 대상이 되는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급여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만 성과로 인정함 (근로자의 부양 가구원수 반영) - 4대보험: 고용안정성 파약을 위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및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된 근로자만 내부공정성으로 인정함 <p>(2) 장기 근속자에 대한 내부공정성과 감가 적용: 채용 후 5년 (60개월) 초과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 고용될 경우 수년간 일하면서 번 돈으로 저소득상태에서 벗어나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가능할 만큼 직무기술이 향상됨. 이러한 경우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소득과 현재의 근로소득 간의 격차만큼 실제 내부공정성평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 정도 근무한 자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노동취약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 그만큼 감가함 - 단, 고령자, 중증장애인과 같이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노동취약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 소득'을 그대로 반영함 -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장기실업자: 다른 취약계층과 달리 취업과 동시에 노동취약상태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며, 노동력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빨리 누리게 되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하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아 내부공정성으로 측정하지 않음 <p>(3) 외부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키움일자리, 일자리안정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외부지원금은 사회에서 보상받은 성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성과에서 제외함
------	---

2.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내부공정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소셜미션	귀사에서 고용된 취약계층 근로자를 훈련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직)시키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목표집단	고용한 근로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취약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으며, 창업을 통한 자립이 아닌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 창업을 통한 자립은 III. 외부공정성과 -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성과로 측정 (p.67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근로자의 취약계층 증빙자료*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2. 내부공정성과 p.100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지표개요</p>	<p>노동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시킨 성과</p>
<p>측정 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1) 측정원리 ‘노동취약상태’의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전문화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타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가능상태’에 이르도록 한 기여분을 측정</p> <p>(2) 측정산식 (노동가능상태 평균 근로소득 - 노동취약상태 평균 근로소득) x 근무개월 수 - 외부지원금</p>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3-4> 경과성 일자리 성과 측정원리</p>
<p>주요 개념 및 범주</p>	<p>(1) 노동취약상태: 취약계층이 해당 사회적기업에게 고용 및 훈련 등의 지원을 받기 전의 상태 (2) 노동가능상태: 해당 취약계층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벗어나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 없는 자영업 등 최소한의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p>
<p>Proxy</p>	<p>(1) 노동취약상태 평균 근로소득: 직접고용성과의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소득 준용 (2) 노동가능상태 평균 근로소득: 실업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의 해당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적용</p>
<p>참고사항</p>	<p>경과성 일자리(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성과는 취약계층 근로자 이직 후 1년 동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이직 후 1년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직업훈련에 의한 기여라고 보지만, 1년 이후부터는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성과로 간주함)</p>

3. 중증 돌봄 대체

내부공정		중증 돌봄 대체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소설미션	귀사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해 돌봄관리 및 자립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목표집단	고용한 근로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근로자의 취약계층 증빙자료*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2. 내부공정성과 p.100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성과			
측정 산식	<p>(1) 측정원리 보호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돌봄 관리 및 지원해준 비용과 기여를 측정</p> <p>(2) 측정산식 중증장애인 연간 총 근무시간 x 주간보호시설의 시간당 이용 비용 = (월평균 근무시간 x 근무개월 수) x 주간보호시설의 시간당 이용 비용</p>			
Proxy	주간보호시설의 시간당 이용비용: 보수성의 원칙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국내 주간보호시설의 평균적인 이용비용(시간당)을 일괄적용(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			
참고사항	기업이 발달장애인의 돌봄관리 및 자립지원 등을 미션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측정함			

III. 외부공정성과

외부공정성과는 취약지역의 소농/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다른 사회적기업의 소득(수입) 증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말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문화적 자산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효과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앞서 살펴본 제품/서비스성과나 내부공정성과와 달리 사회적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성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 기여를 사회적기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과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성과가 창출되며, 이에 따라 세부 성과지표를 판단해 볼 수 있다.

• 추가적인 가격 지불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 또는 농촌 지역의 빈농은 기존 시장에서는 가격 교섭력이 낮아 생산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기 어렵다. 추가적인 가격 지불 방식은 이들 영세 공급자에게 기존 시장 대비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또는 수입을 높여주는 성과이다.

• 추가적인 거래 기회 확보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불안정하여 거래 기회를 확보하기 힘든 취약지역/산업의 소농/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이다. 소농에 대한 계약거래제 적용, 거래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오지마을을 관광상품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 지역 커뮤니티 또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 시민자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

사회적기업 중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사회 전체를 위한 문화적 자산을 형성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사명인 기업이 있다. 이러한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하나의 표준화된 식보다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응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7> 성과창출방식과 세부영역

성과 창출방식		세부영역
추가 가격 지불	소농의 소득 증진	소농거래
	해외 소농의 소득 증진	공정무역 - 농산물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추가 거래 기회	취약국가 생산자의 소득 증진	공정무역 - 비농산물
	취약지역 주민 소득 증진	공정여행 - 해외, 국내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 증진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취약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취약예술인의 소득 증진	문화예술 자산보호
	취약생산자 소득 증진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공공 시민자산 증대	신진작가와와 작품 거래	문화예술 자산보호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 조직 지원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1. 소농거래

외부공정	소농거래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소농거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소농과의 거래를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가 소농인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거래대상의 소농 증명 자료* 2) 거래내역 및 거래액 증빙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농가소득자료, 거래농가정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 어려울 시 소농비율 적용 - 거래대상이 법인농인 경우: 거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에 한하여 추정가능, 개별 문의 요청 (거래물품이 농산물 가공품인 경우 미추정)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등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29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국내 소농을 위해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취약 소농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	---

측정원리 및 산식	<p>(1) 측정원리 해당 공급자가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거래 채널 대비 해당 사회적기업이 공급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높게 지불한 비용의 총액으로 측정하며 관련 외부지원금은 제외함. 직거래, 계약재배, 크라우드형 직거래 등 비즈니스 모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p> <p>(2) 측정산식 2015년 이전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으로 지불한 가격 × 총 거래량 - 외부지원금 = (기업의 농산물 구매가격 - 기존 일반 거래처의 구매가격) × 총 거래량 2016년 이후 = (기업의 거래가격 × 거래량) × 농업유통비율 - 외부지원금</p>
-----------	--

주요개념 및 범주	<p>(1) 농업유통비율 = 출하유통비율 × $\frac{\text{출하유통비율}}{\text{생산자 수취액 비율}}$</p> <p>(2) 소농의 범위: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인(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p>
-----------	---

<p>Proxy</p>	<p>(1) 농업유통비율: 농산물 유통정보(KAMIS)의 유통비용 정보를 proxy로 채택함. 이를 바탕으로 얻은 생산자 수취액 비율, 출하유통비율을 DB화하여 농업유통비율 proxy를 얻어 적용함</p> <p>(2) 국내 소농비율: 사회적기업이 개별 소농의 증빙을 취합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국내 농가 중 소농비율을 구해 국내 소농비율 proxy로 적용함(통계청 - 농림어업조사 - 경작면적 2ha 미만의 비율)</p>																		
<p>참고사항</p>	<p>(1) 소농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의 면적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소농으로 인정함 - 기준값: '동산 농농사의 경우 경작면적이 2ha 미만인 경우, 농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두었고, 이를 조사하기 어려우니 국내 농가 중 소농의 비율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작면적(2ha 미만) 및 연소득(3천만원 이하) 기준 농가비율을 proxy로 적용함 - 법인농은 측정제외가 기본이나 예외 존재(개별 문의) <p><표 3-8>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p> <table border="1" data-bbox="375 831 1420 1155"> <thead> <tr> <th>소농직불금 지급 요건</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td> <td>0.5ha 이하</td> </tr> <tr> <td>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td> <td>1.55ha 미만</td> </tr> <tr> <td>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td> <td>3년 이상</td> </tr> <tr> <td>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td> <td>3년 이상</td> </tr> <tr> <td>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td> <td>2,000만원 미만</td> </tr> <tr> <td>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td> <td>4,500만원 미만</td> </tr> <tr> <td>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td> <td>5,600만원 미만</td> </tr> <tr> <td>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td> <td>3,800만원 미만</td> </tr> </tbody> </table> <p>*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p> <p>(2) 출하유통비 적용의 이유</p> <p><그림 3-5> 농산물 가격의 구성요소 및 사회적기업 유통시 성과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일반 농산물 유통시장(1)과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기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유통시장(2)을 비교하면 위와 같음. (1)과 (2)를 종합, 비교 검토한 결과 (2)는 생산자와 산지조직이 부담했던 출하유통비용을 부담해주거나 전체 가격의 출하유통비율(작물에 따라 다름) 수준으로 거래가를 추가 지불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2016년 이후 사회적기업이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생산자가 추가적으로 얻은 생산자 편익을 사회성과로 측정함 (3) 제한적 적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작물의 범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공품인 경우 (개인농만 가능) (4) 증빙자료 : 거래 가격 비교 자료(통계값 또는 농가가 제시하는 유통거래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29 참고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2. 공정무역 - 농산물

외부공정	공정무역 - 농산물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공정무역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공정무역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거래한 국가가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거래내역 증빙자료* 2) 외화송금내역**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수입신고필증, invoice,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30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운송조건	운송방식(공장인도/본선인도/관세지급인도)을 확인하여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해외 소농에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취약 소농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	--

<p>측정원리 및 산식</p>	<p>(1) 측정원리 해당 공급자가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거래 채널 대비 해당 사회적기업이 공급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높게 지불한 비용의 총액으로 측정하며 관련 외부지원금은 제외함. 공정무역은 시장경쟁의 절대적 약자인 생산자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고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도와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공정무역의 성과지표는 저개발국가의 취약 생산자에 한하여 소득 증진을 통한 자립지원 성과를 반영함</p> <p>(2) 측정산식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으로 지불한 가격 × 총 거래량 - 외부지원금 = (사회적기업의 농산물 구매가격 - 기존 일반 거래처의 구매가격) × 총 거래량 - 외부지원금</p>
------------------	---

<그림 3-6> 공정무역(농산물)성과 측정원리

<p>주요개념 및 범주</p>	<p>(1) 저개발국 기준 :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2) 운송조건의 종류 : 공장인도(EXW), 본선인도(FOB), 관세지급인도(DDP)</p>																																																
<p>Proxy</p>	<p>(1) 기존 일반 거래처의 구매가격 - 해당 농산물의 무역시장에서의 평균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선물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의 Trademap, 또는 세계커피기구(ICO)와 같은 국제적인 농산물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함 - 사회적기업이 농업생산자(수출업자)와 계약상에 기존 거래가의 특정 비율(또는 액수) 이상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계약에 근거해 시장가격 추정 가능함</p> <p>(2) 운송조건에 따른 추가가격지불분 - 운송방식은 인도조건과 운송비 부담 범위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이 중 일반 무역시장의 일반적 운송방식인 관세지급인도(DDP) 외에 해당 사회적기업이 공장인도(EXW) 또는 본선인도(FOB) 방식을 취할 경우 운송비 부담분도 추가적으로 지불한 가격으로 보고 사회성과에 반영함</p> <p><표 3-9> 공정무역시 운송조건의 유형과 매수자의 비용부담</p> <table border="1" data-bbox="383 891 1417 1146"> <thead> <tr> <th>구분</th> <th>인도 조건</th> <th>운송비 부담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공장인도 EXW (Ex Works)</td> <td>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 조건</td> <td>운송비 등 수출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 수출업자의 의무가 최소</td> </tr> <tr> <td>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td> <td>수출업자가 약속한 화물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td> <td>수출업자는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 부담,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td> </tr> <tr> <td>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td> <td>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며, 이때 수입국 내의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td> <td>수출 절차 시작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 수입업자의 의무가 최소</td> </tr> </tbody> </table>	구분	인도 조건	운송비 부담 범위	공장인도 EXW (Ex Works)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 조건	운송비 등 수출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 수출업자의 의무가 최소	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	수출업자가 약속한 화물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수출업자는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 부담,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	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며, 이때 수입국 내의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수출 절차 시작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 수입업자의 의무가 최소																																				
구분	인도 조건	운송비 부담 범위																																															
공장인도 EXW (Ex Works)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 조건	운송비 등 수출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 수출업자의 의무가 최소																																															
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	수출업자가 약속한 화물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수출업자는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 부담,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																																															
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며, 이때 수입국 내의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수출 절차 시작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 수입업자의 의무가 최소																																															
<p>참고사항</p>	<p>(1)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 리스트 (참고: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new-world-bank-country-classifications-income-level-2022-2023)</p> <div data-bbox="462 1294 1292 1960"> <p>Income classif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Income Upper Middle Income Lower Middle Income Low Income Not classified <p>Region</p> <table border="1"> <thead> <tr> <th>Region</th> <th>High Income</th> <th>Upper Middle Income</th> <th>Lower Middle Income</th> <th>Low Income</th> <th>Not classified</th> </tr> </thead> <tbody> <tr> <td>East Asia & Pacific</td> <td>1</td> <td>1</td> <td>1</td> <td>1</td> <td>0</td> </tr> <tr> <td>Europe & Central Asia</td> <td>1</td> <td>1</td> <td>1</td> <td>1</td> <td>0</td> </tr> <tr> <td>Latin America & Caribbean</td> <td>1</td> <td>1</td> <td>1</td> <td>1</td> <td>0</td> </tr> <tr> <td>Middle East & North Africa</td> <td>1</td> <td>1</td> <td>1</td> <td>1</td> <td>0</td> </tr> <tr> <td>North America</td> <td>1</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South Asia</td> <td>0</td> <td>0</td> <td>0</td> <td>1</td> <td>0</td> </tr> <tr> <td>Sub-Saharan Africa</td> <td>0</td> <td>0</td> <td>0</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div> <p><그림 3-7> GNI 기준 소득 그룹별 국가 분포 (출처: World Bank)</p>	Region	High Income	Upper Middle Income	Lower Middle Income	Low Income	Not classified	East Asia & Pacific	1	1	1	1	0	Europe & Central Asia	1	1	1	1	0	Latin America & Caribbean	1	1	1	1	0	Middle East & North Africa	1	1	1	1	0	North America	1	0	0	0	0	South Asia	0	0	0	1	0	Sub-Saharan Africa	0	0	0	1	0
Region	High Income	Upper Middle Income	Lower Middle Income	Low Income	Not classified																																												
East Asia & Pacific	1	1	1	1	0																																												
Europe & Central Asia	1	1	1	1	0																																												
Latin America & Caribbean	1	1	1	1	0																																												
Middle East & North Africa	1	1	1	1	0																																												
North America	1	0	0	0	0																																												
South Asia	0	0	0	1	0																																												
Sub-Saharan Africa	0	0	0	1	0																																												

참고사항

Lower middle income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Low incom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그림 3-8>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 국가 (2022-2023기준)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외부공정		공정무역 - 비농산물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공정무역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공정무역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거래한 국가가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유통채널	1) 거래내역 증빙자료* 2) 외화송금내역**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수입신고필증, invoice,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30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운송조건	공정무역 유통상(도매상)을 통해 유통한 거래가 아닌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해외 생산자/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거래기회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약생산자/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	--

측정원리 및 산식

(1) 측정원리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부족한 저개발국의 영세 상인 및 공장 등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 이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존속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따라서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거래 대비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구매한 물량의 거래액에서의 부가가치분을 측정함

(2) 측정산식
(연간 총 거래액 × 해당 생산조직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

<그림 3-9> 공정무역(비농산물)성과 측정원리

<p>주요개념 및 범주</p>	<p>저개발국 기준 :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p>																																																																																
<p>Proxy</p>	<p>부가가치율 - 해당 조직의 협조를 얻어 재료원가율(인건비 제외) 또는 부가가치율 정보를 받아 산식에 적용함 - 위 방식이 어려운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DB 활용</p>																																																																																
<p>참고사항</p>	<p>(1)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 리스트</p> <div data-bbox="459 629 1278 1151"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Lower middle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8px;"> <tr><td>ALGERIA</td><td>ANGOLA</td><td>BANGLADESH</td><td>BENIN</td><td>BHUTAN</td><td>BOLIVIA</td><td>CABO VERDE</td><td>CAMBODIA</td><td>CAMEROON</td><td>COMOROS</td><td>CONGO, REP.</td></tr> <tr><td>COTE D'IVOIRE</td><td>DJIBOUTI</td><td>EGYPT, ARAB REP.</td><td>ESWATINI</td><td>GHANA</td><td>GUINEA</td><td>HAITI</td><td>HONDURAS</td><td>INDIA</td><td>IRAN, ISLAMIC REP.</td><td>JORDAN</td><td>KENYA</td></tr> <tr><td>KIRIBATI</td><td>KYRGYZ REPUBLIC</td><td>LAO PDR</td><td>LEBANON</td><td>LESOTHO</td><td>MAURITANIA</td><td>MICRONESIA, FED. STS.</td><td>MONGOLIA</td><td>MOROCCO</td><td>MYANMAR</td><td>NEPAL</td></tr> <tr><td>NICARAGUA</td><td>NIGERIA</td><td>PAKISTAN</td><td>PAPUA NEW GUINEA</td><td>PHILIPPINES</td><td>SAMOA</td><td>SAO TOME AND PRINCIPE</td><td>SENEGAL</td><td>SOLOMON ISLANDS</td><td>SRI LANKA</td></tr> <tr><td>TAJIKISTAN</td><td>TANZANIA</td><td>TIMOR-LESTE</td><td>TUNISIA</td><td>UKRANIE</td><td>UZBEKISTAN</td><td>VANUATU</td><td>VIETNAM</td><td>ZAMBIA</td><td>ZIMBABWE</td></tr> </table> <p>Low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8px;"> <tr><td>AFGHANISTAN</td><td>BURKINA FASO</td><td>BURUNDI</td><td>CENTRAL AFRICAN REPUBLIC</td><td>CHAD</td><td>CONGO, DEM. REP.</td><td>ERITREA</td><td>ETHIOPIA</td><td>GAMBIA, THE</td></tr> <tr><td>GUINEA-BISSAU</td><td>KOREA, DEM. PEOPLE'S REP</td><td>LIBERIA</td><td>MADAGASCAR</td><td>MALAWI</td><td>ALI</td><td>MOZAMBIQUE</td><td>NIGER</td><td>RWANDA</td><td>SIERRA LEONE</td></tr> <tr><td>SOMALIA</td><td>SOUTH SUDAN</td><td>SUDAN</td><td>SYRIAN ARAB REPUBLIC</td><td>TOGO</td><td>UGANDA</td><td>TEMEN, REP.</td></tr>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3-10>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 국가 (2022-2023기준)</p> <p>(2) 예외 : 공정무역 유통상(도매상)을 통해 구입해 유통하는 경우 공정무역 도매상(Wholesaler)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목표집단인 취약생산자에게 소득 증진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성과 측정대상에서 제외됨</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NI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NI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외부공정	공정여행 - 해외, 국내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공정여행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공정여행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국내) 거래한 생산자가 취약생산자가 맞는가? (해외) 거래한 국가가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국내) 거래내역 증빙자료 (거래처, 산업 업종, 거래내역, 금액, 수량 등) (해외) 1) 거래내역 증빙자료 (거래처, 산업 업종, 부가가치율*, 금액, 수량 등) 2) 외화송금내역*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송금확인증 등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32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기여율	위탁하여 진행한 여행사업인 경우, 위탁자와 위탁수행자 간의 기여율을 적용하였는가? ※ 위탁사업이 아닌 경우 기여율 100%로 적용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경제적 생산기회가 많지 않은 취약국가 또는 지역에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대자본과 무관한 현지 주민 생산자와 지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			
측정원리 및 산식	<p>(1) 측정원리 공정여행은 취약지역의 현지에 비용을 직접 유입시키고 지역 문화를 존중, 환경영향을 최소화 함. 이는 해당지역과 영세 생산자에게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비농업 공정무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거래의 부가가치전액을 성과로 인정함. 그런데 여행 관련 취약 생산자의 직접 부가가치율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어려우므로 주요 공정여행 국가의 부가가치율 및 우리나라 관련 업종(숙박업, 외식업,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DB화하여 적용함</p> <p>(2) 측정산식 (취약지역과의 연간 총 거래액 × 해당 생산조직(국가)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p>			

<p>주요개념 및 범주</p>	<p>(1) 공정여행: 여행객과 지역주민간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여행 현지에 여행비용이 직접 유입되는 소비를 지향하며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여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p> <p>(2) 취약생산자: 숙박, 음식, 기타서비스 등 관광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지역의 연 매출 3억 이하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p> <p>(3) 취약국가: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p>																																																																																					
<p>Proxy</p>	<p>부가가치율</p> <p>- 해외: 공정여행 서비스 부가가치율</p> <p>- 국내: $\frac{\text{매출과표} - \text{매입과표}}{\text{매출과표}} \times 100$ (출처: 부가가치율 현황 「국세통계」 2005~, 국세청)</p>																																																																																					
<p>참고사항</p>	<p>(1)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 리스트</p> <div data-bbox="459 779 1278 1301"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Lower middle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r><td>ALGERIA</td><td>ANGOLA</td><td>BANGLADESH</td><td>BENIN</td><td>BHUTAN</td><td>BOLIVIA</td><td>CABO VERDE</td><td>CAMBODIA</td><td>CAMEROON</td><td>COMOROS</td><td>CONGO, REP.</td></tr> <tr><td>COTE D'IVOIRE</td><td>DJBOUTI</td><td>EGYPT, ARAB REP.</td><td>ESWATINI</td><td>GHANA</td><td>GUINEA</td><td>HAITI</td><td>HONDURAS</td><td>INDIA</td><td>IRAN, ISLAMIC REP.</td><td>JORDAN</td><td>KENYA</td></tr> <tr><td>KIRIBATI</td><td>KYRGYZ REPUBLIC</td><td>LAO PDR</td><td>LEBANON</td><td>LESOTHO</td><td>MAURITANIA</td><td>MICRONESIA, FED. STS.</td><td>MONGOLIA</td><td>MOROCCO</td><td>MYANMAR</td><td>NEPAL</td></tr> <tr><td>NICARAGUA</td><td>NIGERIA</td><td>PAKISTAN</td><td>PAPUA NEW GUINEA</td><td>PHILIPPINES</td><td>SAMOA</td><td>SAO TOME AND PRINCIPE</td><td>SENEGAL</td><td>SOLOMON ISLANDS</td><td>SRI LANKA</td><td></td></tr> <tr><td>TAJIKISTAN</td><td>TANZANIA</td><td>TIMOR-LESTE</td><td>TUNISIA</td><td>UKRANIE</td><td>UZBEKISTAN</td><td>VANUATU</td><td>VIETNAM</td><td>ZAMBIA</td><td>ZIMBABWE</td><td></td></tr> </table> <p>Low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r><td>AFGHANISTAN</td><td>BURKINA FASO</td><td>BURUNDI</td><td>CENTRAL AFRICAN REPUBLIC</td><td>CHAD</td><td>CONGO, DEM. REP.</td><td>ERITREA</td><td>ETHIOPIA</td><td>GAMBIA, THE</td></tr> <tr><td>GUINEA-BISSAU</td><td>KOREA, DEM. PEOPLE'S REP</td><td>LIBERIA</td><td>MADAGASCAR</td><td>MALAWI</td><td>ALI</td><td>MOZAMBIQUE</td><td>NIGER</td><td>RWANDA</td><td>SIERRA LEONE</td></tr> <tr><td>SOMALIA</td><td>SOUTH SUDAN</td><td>SUDAN</td><td>SYRIAN ARAB REPUBLIC</td><td>TOGO</td><td>UGANDA</td><td>TEMEN, REP.</td><td></td><td></td><td></td></tr>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3-11>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 국가 (2022-2023기준)</p> <p>(2) 증빙자료: 거래금액 및 거래량 등 총 거래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거래처의 영세성 증빙자료</p> <p>(3) 위탁 사업의 경우, 위탁자와 위탁수행자 간 기여율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NI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NI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5.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외부공정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공익성기준	프로젝트의 공익성 기준 및 사회성과 포함 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공익성 기준은 프로젝트 개별적으로 판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크라우드펀딩 내역 및 상세정보(참여기관, 개요 등) 2) 투입비용 관련 자료 3) 수수료 정산 증빙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32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크라우드펀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 기여한 성과
------	------------------------------------

측정원리 및 산식

5-1. 기부형

(1) 측정원리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우회지표로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함.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과 프로젝트 기획자의 기여율은 투입비용 기준으로 나누며, 기획자의 기여는 수수료(기업에 낸 비용)만큼을 투입비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사회적기업의 기여분만을 측정함

$$\text{사회성과(SV)} = \frac{\text{기부형 공익성 펀딩 전체 모금액} \times \text{기부형 펀딩 전체 모금액 및 수수료율}}{\text{기부형 공익성 프로젝트 수} \times \text{SE 기부율}}$$

$$\text{SE 기부율} = \frac{\text{SE 투입비}}{\text{SE 투입비} + \text{수수료}}$$

$$\text{SE 투입비} = \frac{\text{기부형 공익성 프로젝트 수} \times \text{프로젝트 1개당 SE 투입비}}{\text{연간 전체 및 기부형 프로젝트 수}}$$

$$\text{판정사업의 양립비용} = \frac{\text{판정사업의 양립비용}}{\text{연간 프로젝트 전체 수}}$$

$$\text{판정사업의 양립비용} = \frac{\text{판정사업의 양립비용}}{\text{전체 관관비 중 용역사업 관관비를 제외한 판정사업 관관비}} \times \text{전체 이익 중 판정사업 이익} + \text{매출원가}$$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과 프로젝트 기획자의 기여율을 나눔(단, 펀딩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여율은 보지 않음) 기여율은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나누며, 기획자의 기여는 수수료(기업에 낸 비용)와 양립비용을 투입비용으로 판단함

재무제표 포함항목
사업별 이익 현황
재무제표

<그림 3-12> 크라우드펀딩(기부형)성과 측정원리

<p>주요개념 및 범주</p>	<p>(1)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p> <p>(2)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공익활동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받는 모금 형태</p> <p>(3)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또는 공익활동에 기부자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 보장하기 위해 기부 금액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펀딩 방식</p>															
<p>참고사항</p>	<p>(1) 측정대상 선정: 목표집단·공익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 및 목적 등을 프로젝트의 공익성 기준으로 사회성과 포함여부 판단</p> <p><표 3-10> 공익성 판단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63 689 1406 1182"> <tr> <td data-bbox="363 689 427 763">1</td> <td data-bbox="427 689 587 763">동시대의 특정 사회에 속하는</td> <td data-bbox="587 689 1406 763">국제적, 국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와 변화 존재 시대성, 지역성 고려</td> </tr> <tr> <td data-bbox="363 763 427 837">2</td> <td data-bbox="427 763 587 837">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td> <td data-bbox="587 763 1406 837">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지구환경 포함함</td> </tr> <tr> <td data-bbox="363 837 427 972">3</td> <td data-bbox="427 837 587 972">원인과 해결방법이 구조적/ 집단적이고</td> <td data-bbox="587 837 1406 972">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다수 구성원이 문제로 인식하며 집단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 data-bbox="363 972 427 1077">4</td> <td data-bbox="427 972 587 1077">직접적 편익이 발생해야 함</td> <td data-bbox="587 972 1406 1077">사회문제의 당사자인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해야 함 일반 기업의 자본, 설비 마련, 투자형 펀드 등 수혜계층에게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td> </tr> <tr> <td data-bbox="363 1077 427 1182">5</td> <td data-bbox="427 1077 587 1182">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조직 지원</td> <td data-bbox="587 1077 1406 1182">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NGO,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문제/공익성을 인정함 (※ 본 프로젝트 공익성 판단에서의 추가 원칙)</td> </tr> </table>	1	동시대의 특정 사회에 속하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와 변화 존재 시대성, 지역성 고려	2	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지구환경 포함함	3	원인과 해결방법이 구조적/ 집단적이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다수 구성원이 문제로 인식하며 집단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4	직접적 편익이 발생해야 함	사회문제의 당사자인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해야 함 일반 기업의 자본, 설비 마련, 투자형 펀드 등 수혜계층에게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5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조직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NGO,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문제/공익성을 인정함 (※ 본 프로젝트 공익성 판단에서의 추가 원칙)
1	동시대의 특정 사회에 속하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와 변화 존재 시대성, 지역성 고려														
2	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지구환경 포함함														
3	원인과 해결방법이 구조적/ 집단적이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다수 구성원이 문제로 인식하며 집단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4	직접적 편익이 발생해야 함	사회문제의 당사자인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해야 함 일반 기업의 자본, 설비 마련, 투자형 펀드 등 수혜계층에게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5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조직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NGO,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문제/공익성을 인정함 (※ 본 프로젝트 공익성 판단에서의 추가 원칙)														

<표 3-11> 프로젝트 사회성과 포함 여부 판단 기준

No.	구분	포함 여부	상세 기준
1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	모두 포함	(1)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획자이거나 (2) 해당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3) 해당 조직 지원을 위해 펀딩 후원금을 (거의 전액) 사용하는 경우 ※ 단, 사회문제 당사자인 목표집단(수혜계층)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불명확한 소셜미션의 조직을 설립 예정인 경우이거나, 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인 경우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취약계층 지원	모두 포함	(1) 펀딩 목적 또는 제품/서비스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이거나 (2) 후원금 사용 계획이 (거의 전액) 취약계층 지원 목적인 경우 ※ 다만, 후원금의 사용 계획이 대부분 영리 목적(제품 생산 등)이고, 공익 목적은 일부 후원(수익금의 10~20% 수준인 경우는, 펀딩 모금액 중 실제 공익 목적 사용 금액 및 비율을 모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
3	공익 캠페인	조건부	(1) 후원금 사용 목적이 공익(비영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거나 (2) 관련 비영리단체가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의 전액) 후원하는 경우 ※ 단, 위의 두 가지가 아닌 경우 공익 캠페인 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4	환경 문제 해결	모두 포함	(1) 펀딩 목적 또는 제품/서비스의 기능에 환경 문제 해결 성과가 있거나 (2) 후원금 사용 계획이 환경 문제 해결에 있는 경우 ※ 단, 제품/서비스에 환경 문제 해결 기능이 있어야 함 (즉, 과정과 효과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함)
5	안전 문제 해결	조건부	국가 및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문제 해결 성과로 포함함 ※ 그러나, 개인의 책임 또는 사건사고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 해결은 성과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6	소농지원 (생산자지원)	조건부	'로컬푸드 소비 및 유통'은 이미 시장화 되어 있으므로 (로컬푸드, 국산 유기농 식재료의 시장화), 로컬푸드를 사거나 먹는 것 자체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음. 다만, 소농 생산자의 농산물을 더 나은 유통 조건으로 구매하거나 소비하며 지원하는 경우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판단함 외부공정 -소농거래성과 측정 시에는 대상자의 소농 여부 사실(소득 및 경작지)을 확인하나,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미포함하였으나, 다만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곧 생산자인 경우, 중간 유통 구조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므로 편익(소득)이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제공된다고 판단하고, '수확자=생산자=기획자=판매자' 인 프로젝트의 경우에 한하여 소농 생산자 지원 성과로 포함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간 단계의 유통 비율에 따른 기여율을 구분해야 명확히 측정이 가능하므로, 제외함 ※ 단, 축산식품, 2차/3차 가공식품 등은 소농인 생산자가 직접 기획 및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성과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7	공정여행 (지역관광)	조건부	'낙후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취약성을 입증 및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포함하였으나, 위와 유사한 원리로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해당 지역의 주민 단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인 경우에는, 중간 단계 없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경제적 편익을 끼치는 구조로,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 조직=기획자=판매자' 인 경우에 한하여 공정여행 지원 성과로 포함함 ※ 단, 해당 지역의 주민 조직과 직접 관련성 없이, 일반 여행사(공정여행사, 로컬투어기업, 여행기획자 등)에서 기획, 판매하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부가가치 비율 및 기여율을 구분해야 하므로, 제외함
8	문화-영화, 서적, 공연	미포함	단편영화 제작, 공연 제작, 책 출판 지원이 사회서비스 대상은 아니므로 미포함함 (전년도와 동일 원칙)
9	기타 (미포함 대상)	미포함	아티스트 지원, 전통예술계승,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 취약계층 외 일반 아동 대상 교육, 저소득층 외 일반 청년 대상 지원, 미혼모 다문화 등 외 일반 부모 대상 육아 지원 등은 사회문제 정의 원칙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고사항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외부공정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새로운 경제조직을 만들거나 창업지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근로자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취약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일몰여부	창업 이후 3년이 경과하였는가? ※ 3년이 지난 경우 성과가 일몰된 것으로 보며, 생산조직의 성과로 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성과측정여부	위 1, 2, 3, 4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증빙자료	1) 취약계층 증빙자료* 2) 창업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 창업지원, 신규조직 형성 기여활동 자료** 등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2. 내부공정성과 p.100 참고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32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산조직을 직접 만들거나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이 일정한 교육과 적극적인 창업 준비 지원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취약한 노동상태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여 늘어난 소득 수준만큼을 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새로운 경제조직의 부가가치액 - 참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이전 소득 - 외부지원금 = (새로운 경제조직의 총 매출 × 부가가치율) -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이전 소득 - 외부지원금</p>			
Proxy	<p>(1) 새로운 경제조직의 부가가치액: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현재 소득</p> <p>(2) 부가가치액: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 금액(매출)에서 그 생산을 위해 다른 기업에서 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순 생산액</p> <p>(3) 부가가치율: $\frac{\text{매출과표} - \text{매입과표}}{\text{매출과표}} \times 100$ (출처: 부가가치율 현황「국세통계」, 2005~, 국세청)</p> <p>(4) 이전 소득: 참여 근로자들이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이전 상태, 즉 '취약노동 상태'였을 때의 평균 소득</p>			

<p>주요개념 및 범주</p>	<p>(1)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2조상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범위 p.29 및 별첨 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p.100 참고)</p> <p>(2) 생산조직: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사업단 등 취약성이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일치하는 조직에 한정 (도급/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만 성과 측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SE((사회적기업 SE)) -- 사업위탁 --> SEU((자활사업단)) SEU -- 납품 --> SE SEU -- 인건비 --> SC((자활센터)) SC -- 자활사업 위탁 --> SCU((보건복지부)) SCU -- 운영비 인건비 --> SC SC -- 매출(수익)을 자립금으로 별도 적립 후, 자립 시 사업단에 일괄지급 --> SEU SC -- 도급비 지불 --> SE </pre> <p><그림 3-14> 자활사업단 등 생산조직 지원 및 도급 구조</p> </div>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정관 및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 고용 후 창업을 지원한 성과는 창업단계에서의 지원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증진성과는 생산조직으로 이전한다고 보고 창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성과를 일몰 처리하여 본 지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외부공정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취약생산자와 거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유통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기업이 거래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혹은 취약생산자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상호호혜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의 상호호혜가 아닌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성과측정여부	위 1, 2, 3, 4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증빙자료	1) 거래처 취약성 증빙자료* 2) 거래내역 증빙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33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취약생산자에 대한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수익)을 증진시킨 성과 단, 기업이 취약생산자와의 거래를 통해 거래 조직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우, 그 기여분을 사회성과로 인정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거래가격 중 생산 투입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액을 사회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사회적경제조직 혹은 취약생산자와의 총 거래액 × 대상 기업(산업)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p>			
Proxy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매출과표} - \text{매입과표})}{\text{매출과표}} \times 100$ (출처: 부가가치율 현황 「국세통계」 2005~, 국세청)			
주요개념 및 범주	(1)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사업단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 (2) 취약생산자: 취약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액 3억 이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참고사항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유통을 핵심 사명으로 삼지 않는 일반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치사슬 연계하여 생산물을 거래하거나 협의체 등에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여는 본 측정성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2) 예외: 상호호혜(내부거래)의 경우 사회성과로 측정하지 않음			

8. 문화예술 자산보호

외부공정	문화예술 자산보호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신진예술인과 거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신진예술인과 거래, 문화예술 자산보호 등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기업이 거래하는 대상자가 예술가에 해당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2) 거래내역 증빙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3. 외부공정성과 p.134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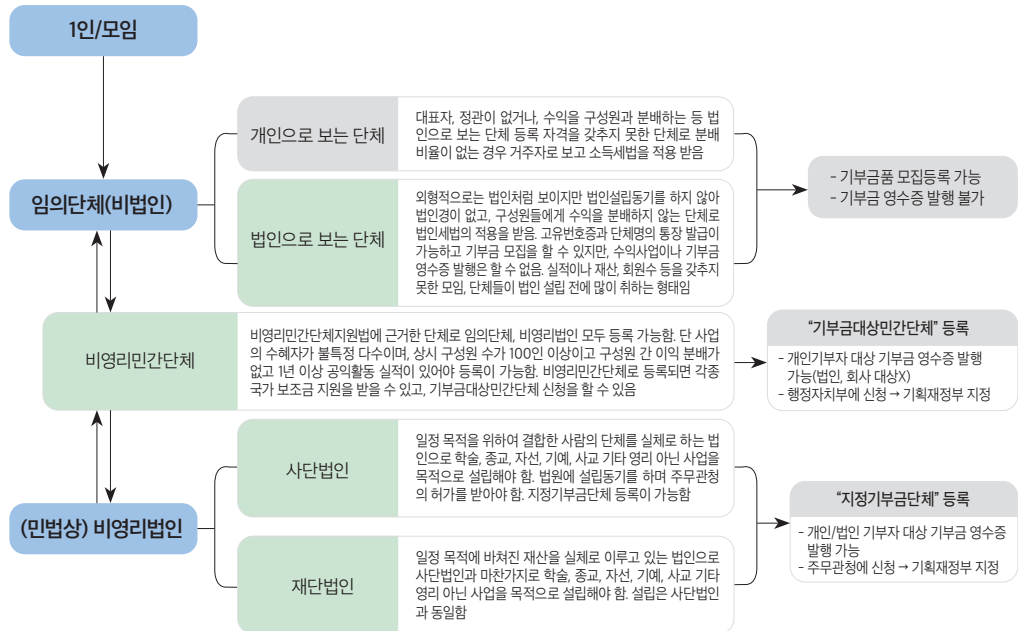
지표개요	예술가와의 작품활동 거래기회 제공을 통해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예술적 자산이 증가하는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문화예술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시장 진입 기회가 부족한 신진예술인을 위해 시장을 열어주거나, 작품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가 연계 되는 부가가치분을 사회성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신진예술인과의 거래 작품 수 × 거래가격 × 작품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p>
Proxy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영업이익} + \text{인건비} + \text{임차료})}{\text{매출액}}$ <p>(출처: 시도/산업/매출액규모별 현황, 「서비스업조사」, 국세청)</p>
주요개념 및 범주	신진예술인: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 예술 활동자료가 확인된 예술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기준,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006_/cs01006_05.jsp)
참고사항	<p>(1) 기업의 사명에 명시된 사회문제와 목표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측정</p> <p>(2) 사회적기업이 제시하는 예술작품 거래가의 부가가치율 또는 재료비(=제작비) 비율은 사전 협의 또는 사후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p>

9. 비영리조직 지원

외부공정	비영리조직 지원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비영리조직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비영리조직 지원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이 기업과 동일한 미션과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연관성 증명 자료* 2) 기부내역 증빙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정관, 업무협약서 등 **기부금영수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기업의 수익을 사회문제를 잘 해결하는 비영리조직에 지속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기부금 전액을 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사회적기업의 현금/현물 기부금(후원금) 전액</p>			

• 비영리조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비영리조직으로 보며, 임의단체(비법인)은 해당하지 않음

주요개념 및 범주



<그림 3-15> 비영리조직의 구분 (출처: 서울 NPO지원센터)

참고사항

- (1)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미션을 가질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영리/공익 조직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경우에만 측정
- (2) 이와 무관한 단순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은 측정대상이 아님
- (3) 기업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기부하는 성과는 할인/무료 제공성과에서 측정하며, 현금 기부나 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 기부한 경우(현물기부)가 이 지표에 해당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외부공정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공공예산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공공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금액을 절감한 효과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공공예산 투입 증명 자료 2) 기업의 처리비용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지역자원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 자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통해 기존에 투입되었어야 할 공공예산의 절감분을 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기존 공공/비영리 영역에서의 처리비용 - 기업의 처리비용) x 기여율 - 외부지원금</p>			
주요개념 및 범주	<p>(1) 기존 공공/비영리 영역에서의 처리비용: 공공예산으로 처리 시 단위당 투입되는 예산(비용)</p> <p>(2) 외부지원금: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보조금, 지원금</p>			
참고사항	공공예산에 투입되는 항목이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측정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외부공정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취약그룹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취약그룹과의 공정한 거래를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목표집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목표집단이 취약그룹 특수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과측정여부	위 1, 2, 3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빙자료	1) 취약그룹 특수직 근로자 증명 자료 2) 계약금액 3) 거래내역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취약그룹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 그룹 특수직 근로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를 예방한 성과를 측정. 이에 대한 우회지표로, 계약 불이행 즉, 용역비체불로 인한 피해 비용을 측정</p> <p>(2) 측정산식 불공정 거래 예방 금액 + 소송절차비용 - 외부지원금 = (계약금액 × 체불 발생 비율 × 평균 체불 기간 × 지연 이자율) + 평균 소송 절차 비용 - 외부지원금</p>
Proxy	<p>(1) 체불 발생 비율: 관련 통계자료 활용</p> <p>(2) 평균 체불 기간: 해당 특수직 근로자의 체불기간을 확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존 구제수단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 기간 적용)</p> <p>(3) 지연 이자율: 제1금융권 일반 신용대출금리</p> <p>(4) 소송절차비용 = 변호사 성공보수금 + 인지액 + 송달료</p>
주요개념 및 범주	취약그룹 특수직 근로자: 노동 조건 및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모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를 특수직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음

IV. 환경성과

환경성과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통해 자원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성과이다.

자원소비 절감성과: 재활용을 통해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하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고갈을 줄인 성과를 의미한다. 유한자원은 비재생재료, 에너지, 용수 등을 지칭하며, 본 성과는 개별 자원의 소비를 줄인 양에 해당 자원에 대한 환경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별자원에 대한 환경가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자원에 대한 미래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수한 자원의 미래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값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자원의 현재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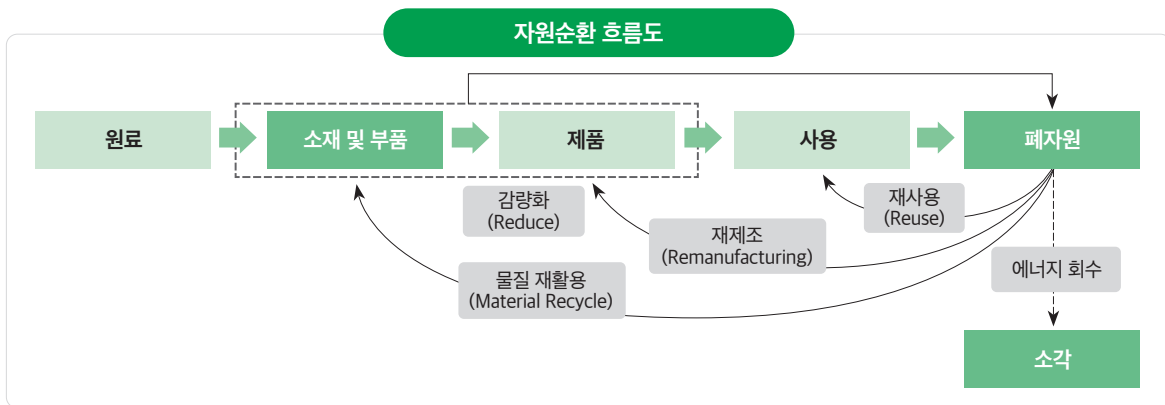
환경오염 저감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낮은 생산방식을 선택하여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환경오염은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유발되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자연계 영향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나 생산기술보다 환경비용을 덜 요구하는 생산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적 편익을 만들어낸다. 본 성과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인 성과로, 개별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량에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은 해당 오염물질이 실제로 야기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비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의 피해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방비용* 성격의 Eco-cost를 오염물질의 환경비용으로 활용한다. (*예방비용: 해당 오염물질의 발생을 적정수준까지 예방하기 위한 비용)

환경비용을 실제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Netherlands의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발한 Eco-cost DB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저감성과를 측정한다.

재사용 reuse	• 사용 후 제품의 재사용을 위한 간단한 조치(단순 청소 및 정비)만을 한 후 잔존 수명만큼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예: 헌옷을 수거하여 세탁한 후 중고가게에서 판매)
재제조 remanufacturing	• 사용 후 제품을 회수, 분해해 잔존 가치가 존재하는 부품에 대해 세척, 검수,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동일) 제품을 만드는 것(예: 사용한 카트리지를 분해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새로운 토너를 채워서 만든 카트리지)
재활용 recycle	•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용융, 파쇄 등 물리적 가공을 거쳐 원재료화 한 후 새로운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예: 폐가죽 시트를 수거하여 가공을 통해 가방으로 제작)
친환경 대체재료 및 재생가능 자원	• 비재생 물질/에너지를 재생가능 물질/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예: 기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대나무를 사용한 대나무 빨대 생산)



<그림 3-16> 자원순환 흐름에 따른 환경성과

1. 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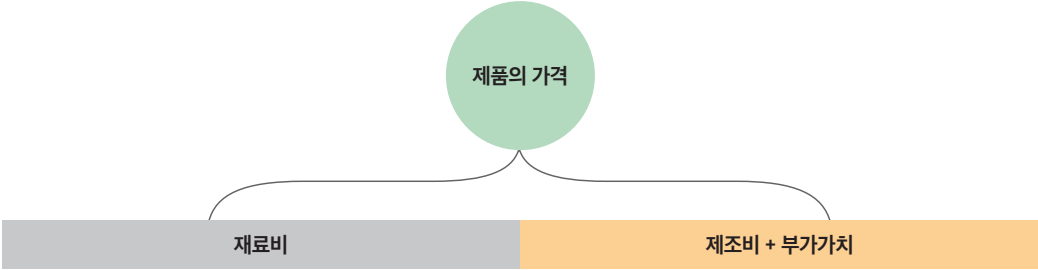
환경	재사용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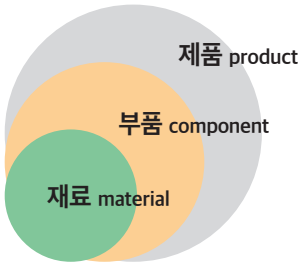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여부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거래내역 (or 해외수출입내역)* 2) 제품의 재료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거래품목, 가격, 거래량 등 확인 필요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4. 환경성과 p.137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재사용을 통해 신규 제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소비량을 줄이고, 신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	---

측정산식	<p>1-1. 재사용 자원소비 절감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p>(1) 측정원리 신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될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로, 개별 자원의 소비를 줄인 양에 해당 자원의 가치를 적용하여 측정함. 자원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비율을 적용함</p> <p>(2) 측정산식 소비되지 않는 재료의 가격 × 중고제품의 잔존가치비율 = (신제품 평균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 × $\frac{\text{중고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 × 중고제품 거래가격</p> </div>
	<p>1-2. 재사용 환경오염 저감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p>(1) 측정원리 신규재료(자원)의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p> <p>(2) 측정산식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중고제품의 잔존가치비율 =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frac{\text{중고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p> </div>

<p>주요개념 및 범주</p>	<p>(1) 재사용: 사용 후 제품을 간단하게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조치만을 행한 후 제품의 잔존 수명만큼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ex. 중고제품)</p>  <p>(2) 유한자원: 비재생재료, 에너지, 용수 등</p> <p>(3) 잔존가치: 구매자가 제품을 소장하고 이용할 때의 가치</p>
<p>Proxy</p>	<p>1-1. 재사용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제품의 재료비 비율: 제품의 가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p>  <p><그림 3-17> 제품 가격의 구성</p> <p>Proxy1 = 소비되지 않는 재료의 가격 = 신제품 평균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p> <p>(2) 중고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중고제품은 신제품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제품을 대체하는 정도, 즉 중고제품에 남아있는 가치를 추정하고자 함. 이는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잔존가치의 정도는 중고제품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보고, 잔존가치 비율은 신제품의 가격 대비 중고제품의 거래가격의 비로 산출함</p> <p>= 중고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 $\frac{\text{중고제품의 거래 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p>
	<p>1-2. 재사용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 중고제품에 대한 모든 재료의 Eco-cost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제품 1개를 구성하는 주재료를 중심으로 환경비용을 추정하여 측정함. 본 DB에서는 재료(물질)의 경우, 무게 단위(kg)로 환경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중고부품 재료의 무게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p> <p>(2) 중고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중고제품 가격이 신제품 평균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p>

<p>기타</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과 측정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의 구성단위를 왼쪽의 그림과 같이 제품의 구성을 구분함 • 제품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진 최종적인 생산물 • 부품은 제품을 구성, 제품의 작동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담당함 • 재료는 부품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그 자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료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 부품이 기능을 갖게 됨 • 제품/부품/재료는 구성요소인지(하위), 구성요소의 결합물인지(상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함 </div> </div> <p><그림 3-18> 제품과 구성요소 개념의 이해</p>
-----------	---

2. 재제조

환경	재제조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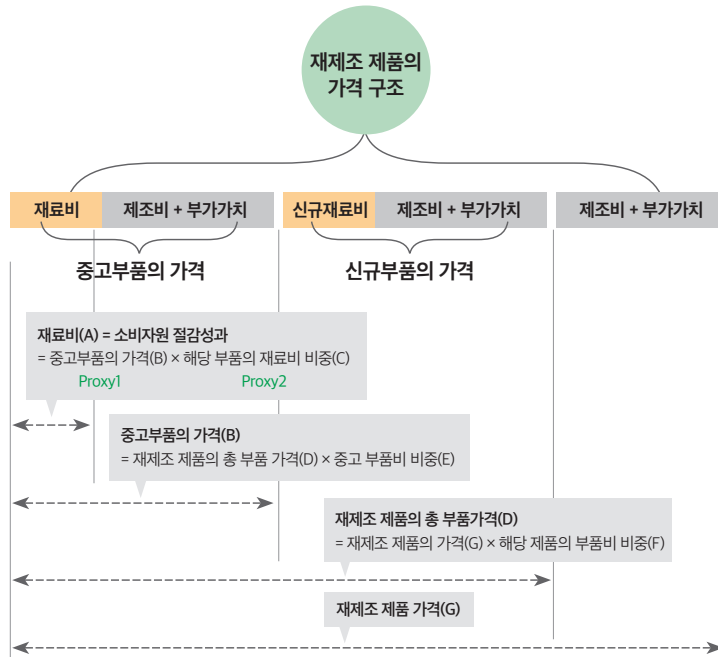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여부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거래내역 (or 해외수출입내역)* 2) 제품의 재료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거래품목, 가격, 거래량 등 확인 필요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4. 환경성과 p.137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재제조를 통해 신규 부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 부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측정산식	<p>2-1. 재제조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측정원리 신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될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로, 개별 자원의 소비를 줄인 양에 해당 자원의 가치를 적용하여 측정함. 자원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비율을 적용함</p> <p>(2) 측정산식 제품 재사용) 중고제품 거래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생산원가율) 부품 재사용) 중고부품 거래가격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p>
	<p>2-2. 재제조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측정원리 재제조 즉, 부품의 재사용을 통해 신규재료(자원)의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p> <p>(2) 측정산식 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 × 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p> $= \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 \times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p>측정산식</p>	$\begin{aligned} \text{환경오염 저감성과} &=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times \frac{\text{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text{Proxy2}} \\ &=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times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 / \text{신제품 평균가격}}{\text{Proxy2}} \end{aligned}$
<p>주요개념 및 범주</p>	<p>재제조: 사용한 제품을 회수해 체계적으로 분해, 세척, 검수,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동일 신규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 즉 제품을 분해한 후, 이 중 잔존가치가 있는 부품을 골라내어 신제품의 부품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함.</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3-19> 재제조 개념</p>
<p>Proxy</p>	<p>2-1. 재제조 자원소비 절감성과</p> $\begin{aligned} \frac{\text{중고부품의 거래가격}}{\text{Proxy1}} &= \frac{\text{재제조 제품의 총 부품가격}}{\text{(D)}} \times \frac{\text{중고부품비의 비중}}{\text{(E)}} \\ &= \frac{\text{재제조 제품의 가격}}{\text{(G)}} \times \frac{\text{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text{(F)}} \times \frac{\text{중고부품비의 비중}}{\text{(E)}} \end{aligned}$ <p>(1) 중고부품 거래가격 = (G) 재제조 제품의 가격 × (F)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 × (E) 중고부품비 비중 (G):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재제조 제품의 판매가격 (F):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 내 제조업 세부 항목의 부품비 비율 (E): 전체 부품 구입 비용 중 중고 부품 확보(수거, 분해 및 검수) 비용의 비중 (2)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 내 재료비 비율 데이터</p>
	<p>2-2. 재제조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p> $\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 = \text{해당 재료의 단위당 Eco-cost} \times \text{재료의 양(kg)}$ <p>중고제품에 대한 모든 재료의 Eco-cost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제품 1개를 구성하는 주재료를 중심으로 환경비용을 추정하여 측정. 본 DB에서는 재료(물질)의 경우, 무게 단위(kg)로 환경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중고부품 재료의 무게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p> <p>(2) 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재제조 제품 가격이 신제품 평균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p> $\text{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참고



<그림 3-20> 재제조 제품의 가격 구조

3. 재활용

환경	재활용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여부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거래내역 (or 해외수출입내역)* 2) 제품의 재료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거래품목, 가격, 거래량 등 확인 필요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4. 환경성과 p.137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재활용을 통해 신규 자원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 자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	--

측정산식	<p>3-1. 재활용 자원소비 절감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p>(1) A형(일부 과정) 폐제품/폐부품을 수거 및 가공하여 다른 제품의 재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A형 자원소비 절감성과 = 중고재료 거래가격 × 해당 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p> <p>(2) B형(전과정) 폐제품/폐부품의 수거부터 분리, 재료화 및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단일 기업이 모두 진행한 경우 B형 자원소비 절감성과 = 재활용 제품의 시장가격 ×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 × 재활용 부품비 비중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p> <p>(3) C형(친환경 프로세스) 타 기업이 만들어낸 재활용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친환경 프로세스 - 자원소비 절감성과로 측정</p> </div>
-------------	--

<p>측정산식</p>	<p>3-2.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A형(일부 과정) 폐제품/폐부품의 수거 및 가공을 통해 재료 폐기 과정의 환경오염을 줄인 경우 A형 환경오염 저감성과 = 해당 재료의 일반 폐기방식 Eco-cost - 해당 재료의 재활용 방식 Eco-cost</p> <p>(2) B형(전과정) 신규 재료 사용 대비 재활용 재료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 경우 B형 환경오염 저감성과 = 신제품 생산 시 Eco-cost - 재활용 제품 생산 시 Eco-cost</p> <p>(3) C형(친환경 프로세스) 타 기업이 만들어낸 재활용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친환경 프로세스 - 환경오염 저감성으로 측정</p>
<p>주요개념 및 범주</p>	<p>재활용: 폐제품이나 부품을 수거하여 활용하기 위해 분해, 용융, 파쇄 등 물리적 가공을 거친 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본 성과에서는 재활용 과정 범위에 따라 프로세스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일부 과정(프로세스 A형, C형) 또는 전과정(프로세스 B형)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의 소비나 생산과정 내 환경오염을 줄이게 된 성과를 측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3-21> 재활용의 개념</p>
<p>Proxy</p>	<p>3-1. 재활용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A형(일부 과정) - 중고 부품/재료 거래가격: 기업이 실제 판매한 중고 부품/재료의 거래가격 (단가 X 총 거래량)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해당 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p> <p>(2) B형(전과정) - 재활용 부품의 거래가격 = (A) 재활용 제품의 가격 × (B) 해당 부품의 부품비 비중 × (C) 재활용 부품비의 비중 (A):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재활용 제품 판매가격 (B):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 내 재료비 비율 데이터 (C): 모든 부품 확보 비용 중 재활용 부품 확보 비용 비중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 제품의 가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p> <p>3-2.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A형(일부 과정) - 해당 재료의 일반 폐기방식 Eco-cost: 재료의 폐기 과정(사용 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Eco-cost 사례) 사용 후 구리를 매립 또는 소각의 방식으로 폐기했을 때의 Eco-cost - 해당 재료의 재활용 방식 Eco-cost: 원재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Eco-cost</p> <p>(2) B형(전과정) - 신제품 생산 시 Eco-cost : 기존 신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Eco-cost 재활용 방식과 생산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재활용 재료를 통해 대체된 주 재료의 단위당 Eco-cost를 선택함 - 재활용제품 생산 시 Eco-cost: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Eco-cost 재활용 방식과 생산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사용된 주된 재활용 재료의 Eco-cost를 선택함 -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재활용 제품의 가격 구조</p> <p>재활용 재료비(A) 제조비 + 부가가치 재료비 제조비 + 부가가치 제조비 + 부가가치</p> <p>재활용 부품의 가격 신규 부품의 가격</p> <p>재료비(O) = 소비자원 절감성과 = 재활용 부품의 가격(B) × 부품 재활용으로 대체된 기존 부품의 재료비 비중(C) Proxy1 Proxy2</p> <p>기존 재료비(O)</p> <p>재활용 부품의 가격(B) = 재활용 제품의 총 부품 가격(D) × 재활용 부품비 비중(E)</p> <p>재활용 제품의 총 부품가격(D) = 재활용 제품의 가격(G) ×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F)</p> <p>재활용 제품 가격(G)</p>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3-22> 재활용 제품의 가격 구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p>	<p>재활용 프로세스 B형 (전과정)에 속하는 경우 다음 세가지 성과 측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재활용 자원소비 절감성과(전과정) 3-2.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전과정) 3-3.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일부 과정)

4. 친환경 대체재료

환경	친환경 대체재료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여부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거래내역 (or 해외수출입내역)* 2) 제품의 재료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거래품목, 가격, 거래량 등 확인 필요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4. 환경성과 p.137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비재생물질, 에너지를 재생가능물질,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성과
측정산식	<p>4-1. 친환경 대체재료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생물질 대신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비재생물질(유한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성과 - 여러 단위의 재생가능물질을 써야 하는 제품 대신 내구성이 높은 비재생물질 한 단위로 대체하여, 재생가능물질의 낭비를 줄이는 성과 <p>(2) 측정산식</p> <p>(기존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재료가격 - 사회적기업이 대체한 재료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자원가격) ×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p>
	<p>4-2. 친환경 대체재료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생물질 대신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비재생물질(유한자원)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재생가능물질을 환경비용이 낮은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여러 단위의 재생가능물질을 써야 하는 제품 대신 내구성이 높은 비재생물질 한 단위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의 총량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p>(2) 측정산식</p> <p>(일반시장이 이용하는 기존 재료 Eco-cost - 사회적기업의 대체재료 Eco-cost) x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p>

<p>주요개념 및 범주</p>	<p><표 3-12> 비재생물질과 재생가능물질의 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념</th> <th>정의</th> <th>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물질/재료자원 Materials</td> <td>비재생물질 (Nonrenewable materials)</td> <td>단시일 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td> <td>광물, 석유 및 그 추출물</td> </tr> <tr> <td>재생가능물질 (renewable materials)</td> <td>생태순환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방대한 자원으로로부터 추출하는 물질</td> <td>농산물</td> </tr> </tbody> </table>	구분	개념	정의	예시	물질/재료자원 Materials	비재생물질 (Nonrenewable materials)	단시일 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	광물, 석유 및 그 추출물	재생가능물질 (renewable materials)	생태순환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방대한 자원으로로부터 추출하는 물질	농산물																			
구분	개념	정의	예시																												
물질/재료자원 Materials	비재생물질 (Nonrenewable materials)	단시일 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	광물, 석유 및 그 추출물																												
	재생가능물질 (renewable materials)	생태순환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방대한 자원으로로부터 추출하는 물질	농산물																												
<p>Proxy</p>	<p>4-1. 친환경 대체재료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기존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재료 가격: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 기존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 (제품) 제품 1단위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 (서비스)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제품 개수 × 제품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p> <p>(2) 사회적기업이 대체한 재료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재료 가격: 사회적기업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 대체하여 사용한 재료의 가격 (제품) 제품 1단위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 (서비스)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제품 개수 × 제품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p> <p>(3)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 측정연도에 제공한 제품/서비스의 총 제공량</p> <p>(4)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해당 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p> <hr/> <p>4-2. 친환경 대체재료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일반 시장이 이용하는 기존 재료 Eco-cost: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동일/유사 기능을 갖는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 시장이 주로 사용하는 기존 재료(물질)의 Eco-cost</p> <p>(2) 사회적기업의 대체재료 Eco-cost: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재료(물질)의 Eco-cost</p> <p>(3) Eco-cost: 3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p>																														
<p>참고</p>	<p><표 3-13> 친환경 대체재료를 통한 환경성과 창출방식</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환경성과 창출방법 및 예시</th> <th>성과구분</th> <th>인정여부</th> <th>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내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1:1 대체)</td> <td rowspan="2">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 나무 탁자)*</td> <td>자원 절감</td> <td>○</td> <td>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희소성이 높은 비재생물질의 소비 절감</td> </tr> <tr> <td>오염 저감</td> <td>○</td> <td>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td> </tr> <tr> <td rowspan="2">재생가능 > 재생가능 (일반 면 > 옥수수면 의복)</td> <td>자원 절감</td> <td>×</td> <td>둘 다 재생가능한 물질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없음</td> </tr> <tr> <td>오염 저감</td> <td>○</td> <td>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td> </tr> <tr> <td rowspan="3">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으로 (1:n 대체)</td> <td rowspan="2">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컵 > 천 기저귀)*</td> <td>자원 절감</td> <td>○</td> <td>내구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원의 총량을 줄임</td> </tr> <tr> <td rowspan="2">오염 저감</td> <td rowspan="2">○</td> <td rowspan="2">소비자원의 총량이 줄면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도 줄임</td> </tr> <tr> <td>재생가능 > 비재생 (종이 > 플라스틱컵)*</td> </tr> <tr> <td>재생가능 > 재생가능</td> </tr> </tbody> </table> <p>* 본 표는 대체자원을 통한 환경성과 창출의 이해를 위해 구조화하여 설명한 것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각 사례의 시장화 여부를 판단하며, 시장화 되었을 경우 사회성과 측정대상에서 제외함(위 예시 중 플라스틱 탁자를 나무탁자로 교체한 경우나, 종이컵을 친환경 플라스틱컵으로 교체한 경우 등은 이미 시장화가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에서 제외함)</p>	구분	환경성과 창출방법 및 예시	성과구분	인정여부	설명	내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1:1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 나무 탁자)*	자원 절감	○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희소성이 높은 비재생물질의 소비 절감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재생가능 > 재생가능 (일반 면 > 옥수수면 의복)	자원 절감	×	둘 다 재생가능한 물질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없음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으로 (1:n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컵 > 천 기저귀)*	자원 절감	○	내구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원의 총량을 줄임	오염 저감	○	소비자원의 총량이 줄면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도 줄임	재생가능 > 비재생 (종이 > 플라스틱컵)*	재생가능 > 재생가능
구분	환경성과 창출방법 및 예시	성과구분	인정여부	설명																											
내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1:1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 나무 탁자)*	자원 절감	○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희소성이 높은 비재생물질의 소비 절감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재생가능 > 재생가능 (일반 면 > 옥수수면 의복)	자원 절감	×	둘 다 재생가능한 물질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없음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으로 (1:n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컵 > 천 기저귀)*	자원 절감	○	내구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원의 총량을 줄임																											
		오염 저감	○	소비자원의 총량이 줄면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도 줄임																											
	재생가능 > 비재생 (종이 > 플라스틱컵)*																														
재생가능 > 재생가능																															

5. 친환경 프로세스

환경	친환경 프로세스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여부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1) 거래내역 (or 해외수출입내역)* 2) 에너지 발전량 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는가? *거래품목, 가격, 거래량 등 확인 필요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 4. 환경성과 p.137 참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기존 생산방식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프로세스를 선택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	---

측정산식	<p>5-1. 친환경 프로세스 자원소비 절감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방식을 사용하여, 석유자원을 대체하고 유한한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를 측정함 - 공정프로세스 개선이나 혁신적 솔루션을 통해 이전에 비해 제품 생산에 쓰이는 재료나 에너지를 줄이는 성과를 측정함 <p>(2) 측정산식</p> <p>(기존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 - 친환경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 × 사회적기업의 총 에너지 제공량</p> </div>
	<p>5-2. 친환경 프로세스 환경오염 저감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생물질 대신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비재생물질(유한자원)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재생가능물질을 환경비용이 낮은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여러 단위의 재생가능물질을 써야하는 제품 대신 내구성이 높은 비재생물질 한 단위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의 총량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p>(2) 측정산식</p> <p>(기존 재료/생산 과정을 통한 제품 단위당 Eco-cost - 대체 재료/생산과정을 통한 제품 단위당 Eco-cost) ×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p> </div>

<p>주요개념 및 범주</p>	<p><표 3-14> 에너지원의 구분</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63 416 491 568"> <p>에너지 자원 Energy sources</p> </td> <td data-bbox="491 416 759 501"> <p>비재생에너지원 (Nonrenewable energy sources)</p> </td> <td data-bbox="759 416 1078 501"> <p>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원</p> </td> <td data-bbox="1078 416 1398 501"> <p>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이를 처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p> </td> </tr> <tr> <td data-bbox="363 501 491 568"></td> <td data-bbox="491 501 759 568"> <p>재생가능물질 (Renewable energy sources)</p> </td> <td data-bbox="759 501 1078 568"> <p>에너지 생성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갈될 우려가 없는 에너지원</p> </td> <td data-bbox="1078 501 1398 568"> <p>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p> </td> </tr> </table>	<p>에너지 자원 Energy sources</p>	<p>비재생에너지원 (Nonrenewable energy sources)</p>	<p>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원</p>	<p>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이를 처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p>		<p>재생가능물질 (Renewable energy sources)</p>	<p>에너지 생성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갈될 우려가 없는 에너지원</p>	<p>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p>										
<p>에너지 자원 Energy sources</p>	<p>비재생에너지원 (Nonrenewable energy sources)</p>	<p>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원</p>	<p>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이를 처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p>																
	<p>재생가능물질 (Renewable energy sources)</p>	<p>에너지 생성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갈될 우려가 없는 에너지원</p>	<p>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p>																
<p>Proxy</p>	<p>5-1. 친환경 프로세스 자원소비 절감성과 (1) 기존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 (2) 친환경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p> <p>5-2. 친환경 프로세스 환경오염 저감성과 (1) 기존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Eco-cost: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동일/유사 기능을 갖는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존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재료의 Eco-cost (2) 친환경 프로세스 에너지/재료 단위당 Eco-cost: 사회적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물질의 Eco-cost (3) 탄소의 사회적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 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p>탄소의 사회적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톤의 탄소(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 • 기후위기로 사회가 부담하는 손실 규모,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재산 피해, 건강 영향 등 포함 • 국제적으로 규정된 계산법이나 기준은 없으며, 나라마다 상황에 맞춰 자의적으로 계산 </div> <p>(4)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p>																		
<p>참고사항</p>	<p><표 3-15> 이산화탄소의 화폐적 가치 산정 방법론</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63 1240 660 1279">산정방식</th> <th data-bbox="660 1240 1027 1279">설명</th> <th data-bbox="1027 1240 1398 1279">대표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3 1279 660 1339"> <p>사회적비용 (SCC: Social Cost of Carbon)</p> </td> <td data-bbox="660 1279 1027 1339"> <p>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p> </td> <td data-bbox="1027 1279 1398 1339"> <p>SCC(미국연방정부/법원), TrueValue(KPMG), TIMM(PWC), True Cost</p> </td> </tr> <tr> <td data-bbox="363 1339 660 1400"> <p>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p> </td> <td data-bbox="660 1339 1027 1400"> <p>국가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정함</p> </td> <td data-bbox="1027 1339 1398 1400"> <p>영국 정부(DECC)</p> </td> </tr> <tr> <td data-bbox="363 1400 660 1460"> <p>예방비용(Prevention Cost)</p> </td> <td data-bbox="660 1400 1027 1460"> <p>비용 효율적인 최선의 기술로 온실가스 한 단위를 저감하는 데 드는 비용</p> </td> <td data-bbox="1027 1400 1398 1460"> <p>Eco-cost DB(Delft Univ.)</p> </td> </tr> <tr> <td data-bbox="363 1460 660 1520"> <p>시장가격제(Market Pricing)</p> </td> <td data-bbox="660 1460 1027 1520"> <p>탄소의 가격화 정도: 배출권 거래가격 + 탄소세 + 화석연료 관련 세금</p> </td> <td data-bbox="1027 1460 1398 1520"> <p>광의(OECD의 ECR), 협의(탄소배출권 시장가격)</p> </td> </tr> <tr> <td data-bbox="363 1520 660 1597"> <p>내부가격제(Internal Pricing)</p> </td> <td data-bbox="660 1520 1027 1597"> <p>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한 가격을 사용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p> </td> <td data-bbox="1027 1520 1398 1597"> <p>전 세계 1,600여 개 기업이 활용</p> </td> </tr> </tbody> </table>	산정방식	설명	대표 기준	<p>사회적비용 (SCC: Social Cost of Carbon)</p>	<p>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p>	<p>SCC(미국연방정부/법원), TrueValue(KPMG), TIMM(PWC), True Cost</p>	<p>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p>	<p>국가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정함</p>	<p>영국 정부(DECC)</p>	<p>예방비용(Prevention Cost)</p>	<p>비용 효율적인 최선의 기술로 온실가스 한 단위를 저감하는 데 드는 비용</p>	<p>Eco-cost DB(Delft Univ.)</p>	<p>시장가격제(Market Pricing)</p>	<p>탄소의 가격화 정도: 배출권 거래가격 + 탄소세 + 화석연료 관련 세금</p>	<p>광의(OECD의 ECR), 협의(탄소배출권 시장가격)</p>	<p>내부가격제(Internal Pricing)</p>	<p>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한 가격을 사용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p>	<p>전 세계 1,600여 개 기업이 활용</p>
산정방식	설명	대표 기준																	
<p>사회적비용 (SCC: Social Cost of Carbon)</p>	<p>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p>	<p>SCC(미국연방정부/법원), TrueValue(KPMG), TIMM(PWC), True Cost</p>																	
<p>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p>	<p>국가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정함</p>	<p>영국 정부(DECC)</p>																	
<p>예방비용(Prevention Cost)</p>	<p>비용 효율적인 최선의 기술로 온실가스 한 단위를 저감하는 데 드는 비용</p>	<p>Eco-cost DB(Delft Univ.)</p>																	
<p>시장가격제(Market Pricing)</p>	<p>탄소의 가격화 정도: 배출권 거래가격 + 탄소세 + 화석연료 관련 세금</p>	<p>광의(OECD의 ECR), 협의(탄소배출권 시장가격)</p>																	
<p>내부가격제(Internal Pricing)</p>	<p>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한 가격을 사용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p>	<p>전 세계 1,600여 개 기업이 활용</p>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환경	생태계 복원력 강화			
----	------------	--	--	--

CHECK LIST

단계	구분	내용	YES	NO
1	사회문제	귀사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셜미션	귀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하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성과측정여부	위 1, 2단계 모두 YES에 답하였는가? ※ 하나라도 NO로 답변한 경우 성과측정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증빙자료	나무 식재 증명 자료 or 생태계 교란종 추출 증명 자료 등 제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외부지원금	정부/시장/민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표개요	식물 식재, 야생동물 보호, 생태공간 조성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인 성과
-------------	---

측정산식	<p>6-1. 나무 식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이 자연환경을 위해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환경성고가 발생함.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산소로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나무 식재의 양과 식재한 나무의 수령 등에 따른 연간 탄소포집량을 토대로 사회성과를 측정함</p> <p>(2) 측정산식 측정년도에 새로 식재한 나무와 과거에 식재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무의 수령, 수종에 따른 연간 탄소포집량 × 수령, 수종별 나무 수 × 탄소배출권 가격</p> </div>
	<p>6-2. 생태계 교란종 추출물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1) 측정원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외래종의 증가 등 생태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환경 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교란종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개체 수 급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음. 산호초 지대를 파괴하고 양식업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태계 교란종인 불가사리의 번식 억제를 위해 정부는 매년 불가사리를 수매하여 소각함. 사회적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료로 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해 판매함</p> <p>(2) 측정산식 (기존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환경비용 - 사회적기업의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환경비용) × 연간 소비량</p> </div>

6-1. 나무 식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

탄소포집량: 국내 수종/수령에 따른 연구자료의 부재로, 수령과 수종에 따른 탄소포집량 데이터를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관리청에서 발행한 자료에 기반하여 DB 구축

<표 3-16> Survival Factors and Annual Carbon Sequestration Rates for Common Urban Trees

Tree Age(yrs)	Survival Factors by Growth Rate			Annual Sequestration Rates by Tree Type and Growth Rate (IBS. carbon/tree/year)					
				Hardwood			Conifer		
	Slow	Moderate	Fast	Slow	Moderate	Fast	Slow	Moderate	Fast
0	0.873	0.873	0.873	1.3	1.9	2.7	0.7	1.0	1.4
1	0.798	0.798	0.798	1.6	2.7	4.0	0.9	1.5	2.2
2	0.736	0.736	0.736	2.0	3.5	5.4	1.1	2.0	3.1
3	0.706	0.706	0.706	2.4	4.3	6.9	1.4	2.5	4.1
4	0.678	0.678	0.678	2.8	5.2	8.5	1.6	3.1	5.2
5	0.658	0.658	0.658	3.2	6.1	10.1	1.9	3.7	6.4
6	0.639	0.639	0.644	3.7	7.1	11.8	2.2	4.4	7.6
7	0.621	0.621	0.630	4.1	8.1	13.6	2.5	5.1	8.9
8	0.603	0.603	0.616	4.6	9.1	15.5	2.8	5.8	10.2
9	0.585	0.589	0.602	5.0	10.2	17.4	3.1	6.6	11.7
10	0.568	0.576	0.589	5.5	11.2	19.3	3.5	7.4	13.2
11	0.552	0.564	0.576	6.0	12.3	21.3	3.8	8.2	14.7
12	0.536	0.551	0.563	6.5	13.5	23.3	4.2	9.1	16.3
13	0.524	0.539	0.551	7.0	14.6	25.4	4.6	9.9	17.9
14	0.512	0.527	0.539	7.5	15.8	27.5	4.9	10.8	19.6

Proxy

<표 3-17>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CO₂ 흡수량(kgCO₂/그루/년)

	임령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강원지방소나무	1.4*	3.2	5.0	6.7	8.1	8.8	9.0	9.2	9.2	9.0	8.6	8.1	7.6
충북지방소나무	1.0*	2.2*	3.9	9.8	9.1	7.9	6.6	4.9	4.0	3.2	2.6	2.2	1.8
잣나무	1.6*	5.2	8.6	11.6	12.5	13.6	14.1	14.2	14.0	13.7	13.3	12.8	12.3
낙엽송	4.3*	4.7	9.2	11.5	13.6	15.0	15.8	16.2	16.1	15.8	15.6	15.5	15.3
리기다소나무	0.9*	3.6	6.8	9.2	10.6	11.1	9.9	9.3	8.6	7.9	7.3	6.7	6.4
편백	2.5*	4.2	5.1	5.7	5.9	5.9	5.8	5.7	5.2	5.0	4.6	4.3	4.2
상수리나무	6.2*	9.4*	13.5	14.6	14.1	14.5	14.9	15.2	15.5	15.8	15.9	16.1	16.3
신갈나무	1.2*	2.6*	5.6	6.4	6.7	8.1	8.8	9.7	10.7	11.8	12.3	12.8	13.1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분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수령(개체목) 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ver.1.2). NIFoS 산림정책이슈 14쪽.

6-2. 생태계 교란종 추출물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성과

(1) 기존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Eco-cost: 사회적기업이 처리한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Eco-cost

(2) 사회적기업의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Eco-cost: 사회적기업이 생태계 교란종을 추출하거나 처리할 때 발생하는 Eco-cost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

<p>주요개념 및 범주</p>	<p>생태계 복원력(Ecological resilience): 생태학에서 복원성(Resilience)은 자연 환경 및 생태계에서 오염이나 작은 변화가 나타났을 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IPCC 6차 평가 보고서는 복원력을 "필수 기능, 정체성 및 구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변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https://academic-accelerator.com/encyclopedia/kr/ecological-resilience) ex) 탄소포집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숲 조성을 통해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p>
<p>적용</p>	<p>나무 식재를 통해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하는 성과는 그 결과가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나타남.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나무가 죽거나 뽑히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나무를 식재한 시점부터 나무를 소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동안은 사회성과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p>

부록

별첨.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 (2023년)

1. 제품/서비스성과

1) 제품/서비스성과 증빙자료 목록

(1) 제품/서비스성과 증빙자료 목록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기업의 미션	필수	정관	• 정관의 명시된 '목적'과 '업종'이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측정
할인/무료 제공에 대한 사실	필수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기관장 직인, 제공인원(수혜자 중 취약계층 인원), 제공일시, 세부내역 기입 •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 서명, 제공일시, 세부내역 기입 및 수혜자 취약계층 증명 서류	• 취약계층으로 100% 구성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는 개별 취약계층 증빙 불필요. 다만 일반기관(학교, 복지관 등)은 취약계층 인원 및 개별 취약계층 증빙자료를 제출
기부내역에 대한 사실	필수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외에 기부(내역)확인서, 기부증서 제출 가능
시장가격 증명 자료	필수	• 서비스/제품 단가표(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 (판매하는 제품/서비스가 아닌 경우) 유사제품/서비스 가격 증빙자료	• 자사 가격 확인가능한 자료 •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서비스 단가표 필요 • 유사한 시장의 제품/서비스 가격 증명 자료를 토대로 기준가격은 측정기관과 논의 후 결정 • 의료비급여 시장가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업체가 속한 지역의 해당 진료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링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 HIRA 비급여진료비 정보
기타	선택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예, 매출현황, 입출금내역, 계약서 등)	• 교육서비스 제공-출석부, 활동일지 등(해외의 경우, 출석부 등으로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대체 가능)
제품/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 생산요소 투입사실에 대한 증빙	필수	• 추가인력 고용 증명 자료(급여대장 등) • 추가재료 투입에 대한 증명 자료 (제조원가율 정보 등)	•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 통제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

2) 증빙자료 예시

(1)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기관명)		연락처
	주소		
사회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p>()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공기관: (인) 대표: (인) 수혜기관: (인) 대표: (인)</p>			

(2)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본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원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단체명): 후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지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연봉기관 등)
 단체명: 사업지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구분	품명	수량	단가	총액	기부금액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대상 기부금 신용금입 기타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특별회계법」 제78조·제78조·제88조제4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직 인 인 인

1. ①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의제4항제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제4항제6호)
 2. ② 기부금 모집처(연봉기관 등)는 법인, 공동자, 종교회사 등 기부금을 모집 업무에 기부금 단체에 모집하는 기능을 담당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모집 업무에 적격성이 있습니다.
 3. ④ 기부내용의 수량 또는 수치는 단위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단위」, 「수량」,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기부금 및 「비공제처(계좌)」, 「계좌번호」 등의 기부금영수증은 신용금입기부금으로 인정, 「지출」, 「공제대상」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4. ④ 기부내용의 수량에는 「공제대상」 항목에는 「공제대상」, 「비공제처」 항목에는 「비공제처」라고, 내용란은 「공제처」로 기재하면 됩니다.

210mm x 297mm(복합기 80g/㎡) 제14호(2021.11.15.)

(5) 유사시장 제품/서비스 시장가격 조사(예.방역소독)

2022년도 소득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

(1회 실시 기준)

(2022. 1. 1현재)

번호	대상 시설	소득횟수	대상면 기본료		대상면 추가료		
			기준단위	원/1회	추가단위	원/1회	
1	공중위생관리법, 관공건용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4월~9월까지 1회 이상 /1개월	20실 (500㎡)	207,000	추가객실 (25㎡)당	7,150	
2	식물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 록 제외)에 따른 식물경관업소(연면적 300㎡ 이상)		300㎡	293,000	추가㎡당	17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다., 라, 록 제외)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고속/적층/일반형) · 전세버스 · 광의자동차		10대 (300㎡)	331,000	추가 1대 (30㎡)당	13,270	
4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291,000		170	
6	항공법에 따른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00㎡	208,000	추가㎡당	190	
7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		1회 이상 /2개월	233,000		200	
8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			208,000		190	
9	유류산업법제정에 따른 대형마트 · 경관점 · 복합점 · 소형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건물시장 및 상점가 확장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포시장		2,000㎡	439,000	추가㎡당	120	
10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 소양재활원 · 정성노인복지원		1,000㎡	325,000	추가㎡당	150	
11	식물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	4월~9월까지 1회 이상 /2개월	300㎡	293,000	추가㎡당	17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 록에 따른 기숙사 화장실, 소양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가, 록에 따른 급식소(50인 이상 수용)		300㎡	315,000	추가㎡당	170	
13	공원법에 따른 공원장(객석 수 300석 이상)		500㎡	284,000	추가㎡당	180	
14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 국민학교 · 영학교 · 고령국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3,000㎡	542,000	추가㎡당	100	
15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 이상)		1,000㎡	283,000	추가㎡당	140	
16	사무실용 건축물 ·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2,000㎡	329,000	추가㎡당	90	
1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50인 이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인 이상)		300㎡	315,000	추가㎡당	180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록 제외)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4월~9월까지 1회 이상/3개월 10월~3월까지 1회 이상/6개월	300세대 (1세대 106㎡기준)	2,271,000	추가세대 (106㎡) 당	4,410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 록에 따른 단독주택		1세대 (100㎡기준)	191,000	추가㎡당	150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 록에 따른 공공화장실		1개소(20㎡)	72,000	추가㎡당	750	

- ※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에 의거 비록별 산출됨.
(본 원가계산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본 방제용역 원가이며 코로나19 등 방제용역 항목이 추가 될 경우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 ※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
- ※ 원가계산표는 구충(위생해충), 구서, 살균소독 비용을 포함한 것임(수목병해충 방제 비용은 미포함).
- ※ 상기 원가계산표는 (사)한국방역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원가계산 공인기관에서 산출한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공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호 : 4월~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득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6) 비급여진료비 정보(예. 서울 독감예방접종료 박씨그리프테트라주 기준)

2022년 심평원 비급여 단가표

제품/서비스 내용	비조합원가	조합원가	심평원 경기지역 평균
독감(박씨그리프테트라주, 지씨플루쿼드리, 지씨플루주 4가)	40,000	30,000	39,938
가다실 9가	220,000	200,000	216,226
갑상선초음파	40,000	32,000	56,607
상복부초음파	60,000	50,000	83,127
경동맥초음파	40,000	32,000	73,359
폐렴구균(프리베나13)	130,000	100,000	125,414
내시경수면비(위+대장)	80,000	70,000	164,478
B형간염(유박스B주)	25,000	20,000	29,505
파상풍(아다셀주)	40,000	32,000	47,958
대상포진(조스타박스주)	180,000	145,000	168,871
치석제거	60,000	30,000	55,532

※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경기 지역 평균가 조사 금액 기준

2. 내부공정성과

1) 내부공정성과 증빙자료 목록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기업의 미션	필수	정관	• 정관상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의미의 문구가 소설미션으로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측정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필수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로형)	• 3장 전체 제출 • 글자가 인식되는 원본 PDF파일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고용안정성	선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산재보험만 가입한 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상의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로 같음함
경과성 일자리 관련	필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안, 결과보고서 등	• 이직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외부지원금	필수	근로자별 연계 국가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	•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의 공문, 사업명, 주최기관,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본, 수급내역 등
	필수	관련 자료 일체	• 고용 관련 외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급통지서 및 산출내역서 등

2) 취약계층 유형별 증빙자료 목록

취약유형	정의	제출서류	비고
[제1호] 일반저소득자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택1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	• 공문, 사업명, 주최기관,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본, 수급내역
		수급자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차상위계층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 국내 월평균 근로소득 60% 이하로 저소득자 여부 판단 • 주소,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유선 요청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제2호]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 자	택1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복지카드	• 주민센터(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상이군경회원증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회에서 발급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장애진단서(전문의)	• 의료기관 문의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가려서 제출

<p>[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p>	택1	성매매피해자동의서	• 주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입소사유 가려서 제출
		보호처분결정문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기관, 연락처, 가해자,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1366 상담기록 or 입소확인증	• 기관, 연락처, 가해자,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의료급여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부양가족 내용 가려서 제출
<p>[제5호]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p>	택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발급 (www.ei.go.kr)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청년취업아카데미 이수증	
		새일센터 프로그램 신청서	
<p>[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p>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에서 발급
<p>[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p>	택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보호비용변경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가려서 제출
		보호처분결정문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연락처, 가해자정보,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상담시설 상담확인증	• 연락처, 가해자정보,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려서 제출
<p>[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 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p>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p>[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p>	<p>택1</p>	<p>혼인관계증명서 F-6 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귀화한 경우 3년 이내만 인정 • 사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p>[제10호] 갱생보호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p>	<p>해당자</p>	<p>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p>	
<p>[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p>	<p>택1</p>	<p>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보호비용변경신청서 보호처분결정문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가려서 제출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p>[제12호] 기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 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p>	<p>해당자</p>	<p>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p>[제12호] 기타-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해당자</p>	<p>수용증명서, 출소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소·구치소의 민원실 방문 혹은 • 법무부 형사사법포탈(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칭호번호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소년원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p>	<p>해당자</p>	<p>소년퇴원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방문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퇴원사유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보호관찰 청소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p>	<p>해당자</p>	<p>보호관찰기관 발급 증명서</p>	
<p>[제12호] 기타- 노숙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p>	<p>택1</p>	<p>시설확인증 자활근로자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 고용보험사이트 발급 (www.ei.go.kr)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세대주 성명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택1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중독자 치료병원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소견, 질병분류기호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제12호] 기타-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택1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입자,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 주소, 진단명, 상병기호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제12호] 기타- 여성가장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택1	가족관계등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통반장확인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근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등 																														
[제12호] 기타- 난민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해당자	난민인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심사 거점기관 문의 [전국 난민심사 거점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th> <th>난민심사 거점 기관</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td> <td>→ 서울출입국·외국인청</td> <td>02-2650-6399</td> </tr> <tr> <td>인천 (출장소) 안산</td> <td>→ 인천출입국·외국인청</td> <td>032-890-6300</td> </tr> <tr> <td>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td> <td>→ 부산출입국·외국인청</td> <td>051-461-3091</td> </tr> <tr> <td>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td> <td>→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53-980-3505</td> </tr> <tr> <td>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td> <td>→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62-605-5207</td> </tr> <tr> <td>제주</td> <td>→ 제주출입국·외국인청</td> <td>064-723-3494</td> </tr> <tr> <td>여수 (출장소) 광양</td> <td>→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61-792-1139</td> </tr> <tr> <td>화성외국인보호소</td> <td>→ 화성외국인보호소</td> <td>031-8055-7000</td> </tr> <tr> <td>청주외국인 보호소</td> <td>→ 청주외국인보호소</td> <td>043-740-7512</td> </tr> </tbody> </table>	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심사 거점 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399	인천 (출장소) 안산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300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091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05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207	제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23-3494	여수 (출장소) 광양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792-1139	화성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0	청주외국인 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043-740-7512
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심사 거점 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399																															
인천 (출장소) 안산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300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091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05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207																															
제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23-3494																															
여수 (출장소) 광양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792-1139																															
화성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0																															
청주외국인 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043-740-7512																															
[제12호] 기타-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택1	보호종료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센터, 정부24, 복지포에서 발급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인적사항 가려서 제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대리인정보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해당자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퇴소사유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조손가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	택1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주민센터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센터에서 발급
		관계기관 확인서	
[제12호] 기타-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해당자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 등	
[제12호] 기타-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	신용등급조회서류	
[제12호] 기타- 학교폭력 피해자	택1	해당기관 확인서	
		관계기관 상담신청서	
		조치결정통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학교, 조치원인, 담당자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가정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택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보호비용변경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확인서	
[제12호] 기타-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택1	대상 프로그램 상담, 지원 신청서	
		관계기관 확인서	
[제12호] 기타-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	택1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입자,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 주소, 진단명, 상병기호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확인서	

3) 증빙자료 예시

(1)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사업
2.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유통 및 도소매업
3. 식자재 및 일반상품 유통업
4. 구매대행서비스업(MRO)
5. 농산물 가공사업 및 전처리 사업
6. 식당 및 카페운영업
7. 식당 및 카페 등의 위탁운영업
8. 프랜차이즈사업
9. 도시락제조 및 판매업
10. 출장 및 파견업
11. 기타 위에 부수되는 사업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가로형, 3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세(1) (개정 2014.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 (1쪽)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원번호: 2001)

① 계속연도 2020

② 과세연도 2020

③ 과세연도 2020

④ 과세연도 2020

⑤ 과세연도 2020

⑥ 과세연도 2020

⑦ 과세연도 2020

⑧ 과세연도 2020

⑨ 과세연도 2020

⑩ 과세연도 2020

⑪ 과세연도 2020

⑫ 과세연도 2020

⑬ 과세연도 2020

⑭ 과세연도 2020

⑮ 과세연도 2020

⑯ 과세연도 2020

⑰ 과세연도 2020

⑱ 과세연도 2020

⑲ 과세연도 2020

⑳ 과세연도 2020

㉑ 과세연도 2020

㉒ 과세연도 2020

㉓ 과세연도 2020

㉔ 과세연도 2020

㉕ 과세연도 2020

㉖ 과세연도 2020

㉗ 과세연도 2020

㉘ 과세연도 2020

㉙ 과세연도 2020

㉚ 과세연도 2020

㉛ 과세연도 2020

㉜ 과세연도 2020

㉝ 과세연도 2020

㉞ 과세연도 2020

㉟ 과세연도 2020

㊱ 과세연도 2020

㊲ 과세연도 2020

㊳ 과세연도 2020

㊴ 과세연도 2020

㊵ 과세연도 2020

㊶ 과세연도 2020

㊷ 과세연도 2020

㊸ 과세연도 2020

㊹ 과세연도 2020

㊺ 과세연도 2020

㊻ 과세연도 2020

㊼ 과세연도 2020

㊽ 과세연도 2020

㊾ 과세연도 2020

㊿ 과세연도 2020

계 4,823,730 4,823,730 72,080 72,080 7,200

210mm X 297mm (백상키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호서세(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6쪽) 비과세 및 과세소득 코드 참조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쪽)

II. 비과세소득

(사원번호: 2001)

1.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

2.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

① 과세연도 2020

② 과세연도 2020

③ 과세연도 2020

④ 과세연도 2020

⑤ 과세연도 2020

⑥ 과세연도 2020

⑦ 과세연도 2020

⑧ 과세연도 2020

⑨ 과세연도 2020

⑩ 과세연도 2020

⑪ 과세연도 2020

⑫ 과세연도 2020

⑬ 과세연도 2020

⑭ 과세연도 2020

⑮ 과세연도 2020

⑯ 과세연도 2020

⑰ 과세연도 2020

⑱ 과세연도 2020

⑲ 과세연도 2020

⑳ 과세연도 2020

㉑ 과세연도 2020

㉒ 과세연도 2020

㉓ 과세연도 2020

㉔ 과세연도 2020

㉕ 과세연도 2020

㉖ 과세연도 2020

㉗ 과세연도 2020

㉘ 과세연도 2020

㉙ 과세연도 2020

㉚ 과세연도 2020

㉛ 과세연도 2020

㉜ 과세연도 2020

㉝ 과세연도 2020

㉞ 과세연도 2020

㉟ 과세연도 2020

㊱ 과세연도 2020

㊲ 과세연도 2020

㊳ 과세연도 2020

㊴ 과세연도 2020

㊵ 과세연도 2020

㊶ 과세연도 2020

㊷ 과세연도 2020

㊸ 과세연도 2020

㊹ 과세연도 2020

㊺ 과세연도 2020

㊻ 과세연도 2020

㊼ 과세연도 2020

㊽ 과세연도 2020

㊾ 과세연도 2020

㊿ 과세연도 2020

계

210mm X 297mm (백상키80g/㎡)

(4)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출력일시 : 2022.02.15 16:0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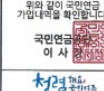
발급번호	20220215124338	발급일시	2022-02-15 16:06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1


연번	주요(외국인) 등록 번호	성명	자격 취득 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박성	2014.04.01	2014.04.01	2014.04.01	2014.04.01
2		박안	2014.10.06	2014.10.06	2014.10.06	2014.10.06

이 하 여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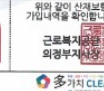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확인용]으로 신청 발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용]은 4대 사회보험의 업무목적에 위해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자격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창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 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문의처: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5)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가입내역은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근로자 고용일을 뜻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건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취득일(고용일)'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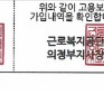
국민연금
이 사
증명서






국민건강보
이 사
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외장부지사장
증명서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발급대상 상의 업무목적에 90일까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발급자사서(이)기 및 e-이서 활용 가능합니다.
 * 영문판, 정보연계서비스, 4대 사회보험이 함께 제공됩니다.

(5)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외2서시] 4차정 2015.4.20.

수급자 증명서

제 호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사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mm×297mm(민세용지(특규) 120g/㎡)

(6) 차상위계층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4. 20.>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발급번호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 X 297mm(인쇄용지(특급) 120g/㎡)</p>		

(7)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귀속)		처리기간																																		
				즉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p>◇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6">종합과세</th> <th rowspan="2">분리과세</th> <th rowspan="2">총 결정세액</th> </tr> <tr> <th>이자</th> <th>배당</th> <th>사업</th> <th>근로</th> <th>연금</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수입금액</td> <td>0</td> <td>0</td> <td></td> <td></td> <td>0</td> <td>0</td> <td></td> <td>0</td> </tr> <tr> <td>소득금액</td> <td>0</td> <td>0</td> <td></td> <td></td> <td>0</td> <td>0</td> <td></td> <td>0</td> </tr> </tbody> </table> <p>*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납출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된 분리과세 소득(2분만월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휘약단·배상금으로 대채된 기타소득)과 수입금의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 총 결정세액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합계액임</p>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 결정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수입금액	0	0			0	0		0	소득금액	0	0			0	0		0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 결정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수입금액	0	0			0	0		0																														
소득금액	0	0			0	0		0																														
<p>◇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소득발생처</th> <th rowspan="2">지급받은 총액</th> <th rowspan="2">소득금액 총액</th> <th rowspan="2">총 결정세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법인명(상호)</th> <th>사업자등록번호</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2021. ~ 2021.)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세무서장 (인)</p>					구분	소득발생처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총액	총 결정세액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소득발생처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총액		총 결정세액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p>◇ 용어설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받은 금액</th> <th>지급받은 총액</th> <th>소득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이자소득</td> <td>지급받은 이자소득액</td> <td>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td> <td>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td> </tr> <tr> <td>배당소득</td> <td>지급받은 배당소득액</td> <td>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td> <td>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td> </tr> <tr> <td>사업소득</td> <td>지급받은 총수입금액</td> <td>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결산 사업소득 포함)</td> <td>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결산 사업소득 포함)</td> </tr> <tr> <td>근로소득</td> <td>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임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td> <td>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임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td> <td>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td> </tr> <tr> <td>연금소득</td> <td>공적기금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td> <td>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td> <td>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td> </tr> <tr> <td>기타소득</td> <td>지급받은 기타소득액</td> <td>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td> <td>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td> </tr> <tr> <td>공과금소득</td> <td>공과금에서 지급받은 총액</td> <td>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td> <td>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받은 금액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지급받은 이자소득액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	지급받은 배당소득액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사업소득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결산 사업소득 포함)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결산 사업소득 포함)	근로소득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임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임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	공적기금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타소득	지급받은 기타소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공과금소득	공과금에서 지급받은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구분	지급받은 금액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지급받은 이자소득액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	지급받은 배당소득액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사업소득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결산 사업소득 포함)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결산 사업소득 포함)																																			
근로소득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임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임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	공적기금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타소득	지급받은 기타소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공과금소득	공과금에서 지급받은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접수번호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인도처																																		
	증명발급자	연립봉사실																																				
	세척담당자	소득세과																																				

(8) 건강보험납부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발급번호 : _____

가입자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납부자 번호 : _____ 사업장 명칭 : _____

20 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월 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비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월	원	원	원	원	
2월	원	원	원	원	
3월	원	원	원	원	
4월	원	원	원	원	
5월	원	원	원	원	
6월	원	원	원	원	
7월	원	원	원	원	
8월	원	원	원	원	
9월	원	원	원	원	
10월	원	원	원	원	
11월	원	원	원	원	
12월	원	원	원	원	
연말정산	원	원	원	원	
납부 총액	건강보험료	원	사용목적	납부확인용	
	장기요양보험료	원			
합계		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위와 같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03.2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9) 주민등록증



(10) 운전면허증



(11)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00.4.3. 개정)

장 애 인 증 명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장 애 예상기간	영 구	⑤ 장 애 부 터 내 용 까지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 영 구				
<p>위 사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6조의 2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발행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세무서장 귀하</p>					
<p>※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의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 ⑥란에는 다음 중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상장자와 경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3. 형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장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2226-74911일 97.2.2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12) 복지카드



(13) 상이군경회원증



(14) 장애인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27>

장애인단서

진단대상자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기록·검사결과·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제관장	필요사유	개관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단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대상자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직 자격번호) (전문직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장애인단서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은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명세서로 기재한 후에 장애인단서(가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인하여 피할 경우
주소의 변경사항에 의료기관의 변경을 해야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 진단의사의 소견에는 「의사」항목 외의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장애상태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별첨지 80g/㎡)

(15) 성매매피해자동의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유리사항 필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입소(이용) 사유		

본인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에 입소(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OO 지원시설장 · 자활지원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 본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별첨지 80g/㎡ (광활용용))

(18) 1366 상담기록/ 입소확인서

입 소 확 인 서

수 신 기 관	○○○○○○○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방문(원장) <input type="checkbox"/> 사이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긴급피난처 입소		
피 해 자 인 격 사 항	성 명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	
가 경 자 보	개인정보이용 동의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가 경 자 보	피해자와의 관계	부모	성(姓氏) ○
	피 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정폭력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성매매 <input type="checkbox"/> 데이트폭력 <input type="checkbox"/> 스토킹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성범죄 <input type="checkbox"/> 정서 및 정신건강 <input type="checkbox"/> 이주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 담 체 널 린 기 간	(긴급피난처입소) 2020년 09월 205일 ~ 2020년 09월 05일 (1일)		
피 해 내 용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폭력피해로 입소함 *위 사실은 상담 의뢰인의 진술에 의한 내용임을 확인함		
발 급 사 유	위 의뢰인이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서 입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 의료급여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급여증명서

발급번호 :			
보 장 기 관 명		보장기관기호	
세대주	성 명	의료급여증별	() 등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 양 가 족	성 명	세대주와 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개별별자격취득일
최 초 자 격 취 득 일			
위의 사람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비 고			
1. 이 증명서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페이지번호 : 1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신청일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사항
	■■■■■	■■■■■	■■■■■
일련번호	사업장 명칭	취득일/권근일	상실일
1	■■■■■	2010/08/01	2010/11/20
2	■■■■■	1999/10/02	1999/12/31
= 이 하 여 백 =			
※ 본 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터기관 제출 등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04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21)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제 2015-02-05-009 호

수 료 증

성 명 : ■■■■■

생년월일 : ■■■■■


훈 련 명 : 2015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 정 명 : 소프트웨어테스터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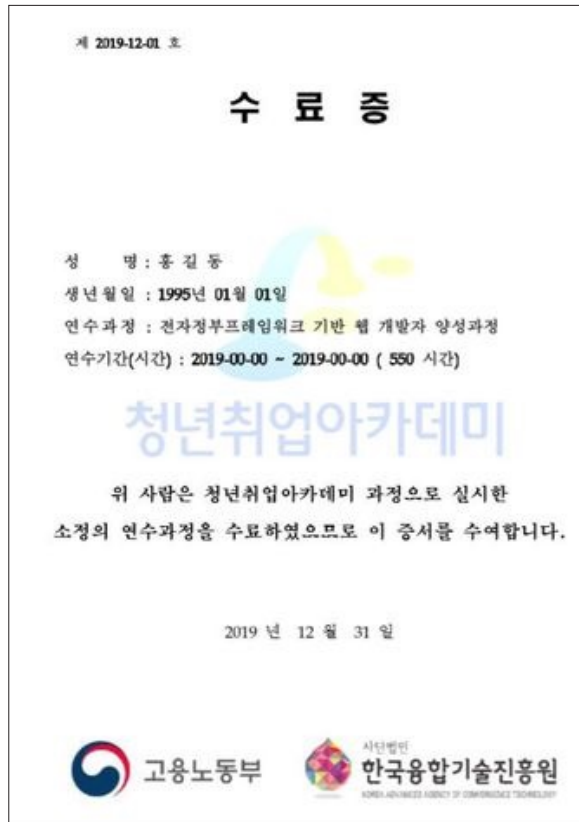
교육기간 : 2015. 08. 17 ~ 10. 30 (212시간)

위 사람은 2015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소프트웨어테스터 양성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장 

(22) 청년취업아카데미 이수증



(23) 새일센터 프로그램 신청서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지원센터 상담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상담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정보 게재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_____ (인)

(24)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접수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인 격 사 실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일 국 일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p>			

(25)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 000250 호

피해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피 해 일 시	2019-03-05 21:30 ~			
피 해 장 소	양산시			
피 해 상 황				
사건개요 (신고내용)	폭행			
신고(접수)일시	2019-03-05 22:42	용 도	범원계출용	
상기와 같이 피해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03월13일				
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		
(피해의자와(과)의 관계 : 본인)				
주 소 :				
경남양산경찰서장 귀하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사건접수번호 : 경남양산경찰서				
(2019.03.05)				
경남양산경찰서장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산 자 료		처리기간	즉 시	
대 조 별		수수료	없 음	

(26) 보호비용(변경)신청서

■ 상해예방차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비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 상태 (장애/질병)	취업 상태 직업	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동지방법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그 밖의 수단

「상해예방차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규약

1. 계획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우편으로 또는 납입금 증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다) 1부	없음

고 지 사 랑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신청 및 보호 실시와 관련된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호대상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무양육부양의 소극·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범죄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공중·주세·지방세·도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그중보험·신체보험·출입국·방부·보호금과·교양·가계경제상황 등 관련 정보를 당국자로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취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처 리 회 차

```

        graph LR
            A[신청서 접수  
신청인] --> B[접수  
처리기간]
            B --> C[검토  
(단문 정보 확인)  
처리기간]
            C --> D[결재  
처리기간]
            D --> E[결정내용 통보  
·비용지급]
            
```

210mm×297mm(복합지 80g/㎡(제출용종))

(27) 보호처분결정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처 분 결 정

등 본 입 니 다
2021. 11.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사 건 2021푸1 폭행, 공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학생

주 거

등록 기준지

보 조 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박세미, 문필성, 최정아

주 문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교육개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판사

제1부 사회성과의 정의

제2부 사회성과 측정개요

제3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부록 별첨

(28)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

109076229_0001450_02_03 / 2,1177

서울남대문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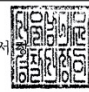
제 회하
 수신
 제목 지서(피의자·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input type="text"/>	사건번호	<input type="text"/>
죄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결정종류	1. 송치 2. 이송 3. 수사중지 (참고인증서) (전력)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수사과 지능팀 경감 <input type="text"/>	☎	02-2096 <input type="text"/>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ood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사.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원치않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

서울남대문경찰서 

(29)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입 소 확 인 서

수신기관	○○○○○○○		
구분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방문(원장) <input type="checkbox"/> 사이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긴급피난처 입소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	
가해자 정보	피해자와의 관계	부모	성(姓氏) ○
	피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정폭력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성매매 <input type="checkbox"/> 데이트폭력 <input type="checkbox"/> 스토킹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성범죄 <input type="checkbox"/> 정서 및 정신건강 <input type="checkbox"/> 이주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체널 및 기간	(긴급피난처입소) 2020년 09월 205일 ~ 2020년 09월 05일 (1일)		
피해내용	부母的 신체적·정서적 폭력피해로 입소함 *위 사실은 상담 의뢰인의 진술에 의한 내용을 확인함		
발급사유	위 의뢰인이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서 입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0) 상담시설 상담확인증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확인서

* 발급번호 : 제 - 호

성명	소속	
상담종류 <input type="checkbox"/> 개인상담 <input type="checkbox"/> 집단상담 <input type="checkbox"/> 심리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발급종도 <input type="checkbox"/> 온·계출 <input type="checkbox"/> 기관 제출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방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방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담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담관		
상담주제	*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	

상기장은 취외 길이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전문상담기관
기관장 ○○○ (인)**

(31)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법거 제14호외3차외) <개정 2017. 5. 2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꼭꼭이 바라며, 유효하는 내용 앞의 []에 √표를 씁니다.

연수번호 _____ 접수일자 _____ 처리 기간: _____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해제) 대상자 (총 _____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 []해제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쓰는 칸)	
신청인 주소 (시·도) (시·군·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본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 목포기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서류

1. 가압류판결 및 배제자보호 등에 관한 판결, 제2호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있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다중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사실 입증 확인서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사실 입증 확인서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접수 확인서
6. ‘민생위기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임시거류복지시설
7. ‘공공기관사유규칙’, 제61조에 따라 하등 고소·고발사건진행결과통지서
8. ‘가정폭력사유규칙’, 제72조에 따라 하등 사건처분결과통지서
9. ‘가정보호수용규칙’, 제3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집행서의 통분 또는 소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집행서의 통분 또는 소본

21004970110002003/00 또는 21004970110002003/00

(32)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7.22>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33) 혼인관계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혼인관계 증명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滙

혼인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여인(朴女人)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여	密陽

구분	상세내용
혼인	[신고일] 1986년 01월 01일 [배우자] 전여인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1987년 04월 04일 [배우자] 전여인
혼인	[신고일] 2008년 02월 01일 [배우자] 박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680202-2345678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34) F-6 비자




(35)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0000-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총 8개 이력 중 8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1	주식	20	
2	사단	20	20
3	주식	20	20
4		20	20
5	주식	20	20
6	(주	20	20
7	주식	20	20
8		20	20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1월 16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36) 수용증명서, 출소증명서

출 소 증 명 서					처리기간
					즉 시
출 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 용 사 항	청호번호	수용기관			
	구 속 일 자	형 락 정 일	출 소		
	형기종료일	출 소	사유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담 당 자 (인)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교 도(구치, 감호) 소장</p>					

(37) 소년퇴원증명서

[] 재원 / [] 퇴원 증명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발급번호 제 0000-0000000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명사항	교육기관				
	입원일자			보호처분일자	
	[] 만기퇴원 예정일자			퇴원사유	
	[] 퇴원일자				
종도				필요부수	
위와 같이 []재원/[]퇴원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원장 또는 ○○학교장 직인					
참고사항	"만기퇴원 예정일자"는 최대 교육가능 일자를 계산한 것으로, 실제 퇴원 일자는 소년의 교정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복합지 80g/㎡)					


(38) 노숙인 시설확인증

10-00290


확 인 증

○ 성 명 : ██████████
○ 주민번호 : ██████████

상기인은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을 확인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4-30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39) 자활근로자확인서

자 활 근 로 자 확 인 서				처리기간 즉 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951213 - ██████████	
주 소 (소재지)	██████████			
세대주성명 (시설행)	██████████	세대주와의 관계	자녀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			
사업내용				
읍 도				
제 출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7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전라북도 진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제 ██████████ 호			
상기자가 자활근로자임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2년 01월 17일 전라북도 진안군수 				

(40)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병 명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주 질병·부상) (부 질병·부상)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입원일: 년 월 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	
용 도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 의사 [] 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 호
성 명: <http://omu.seoul.go.kr>

(41)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건강IN > 정책센터 > 국민과함께 > 공단요조모

개인민원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 요구되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시켜주는 산정특례 제도의 본인 등록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름: []

질환구분	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명명	제정시작일	제정종료일	비고
희귀질환	V133	연5상 류마티스관절염, 상해발달 부문		2016.04.21	2021.04.20	

이용안내

- 조회할 기간이 유효한 등록내역만 조회됩니다.
- 조회내역은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의 유효성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행 방범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원부동신명이용추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별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암 기타 산정특례질환)

산정특례등록번호: [] 접수일자: []

간접의료기관번호: [] 가입자(성명):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결과: 문자서비스(SMS) E-mail

Email: [] 주소: [] 휴대전화: []

주소: [] 지택전화: []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외래	진단확진일
암, 기타	진단형	[]	[]
중증희상	[]	[]	[]

【 최종 진단 방법 】 특약내역 관속 세포 가환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기타 산정특례질환	
<input type="checkbox"/> ① 검사 <input type="checkbox"/> Bone <input type="checkbox"/> CT <input type="checkbox"/> MRI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영상검사 <input type="checkbox"/> Bone <input type="checkbox"/> CT <input type="checkbox"/> MRI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input type="checkbox"/> ② 특수 생화학/연역학적검사, 도담/태양	
<input type="checkbox"/> ③ 특수 생화학 또는 연역학적검사		<input type="checkbox"/> 검사 등	
<input type="checkbox"/> ④ 세포학적 또는 열역학적 검사		<input type="checkbox"/> 유전학적 검사	
<input type="checkbox"/> ⑤ 전기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input type="checkbox"/> 조직학적 검사	
<input type="checkbox"/>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input type="checkbox"/>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함

요양기관명 (기호): ()
담당의사 (면허번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정보를 진로상 필요시 제공(요양기관 및 의료비지원자 선정을 위한 보전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42)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	---------------------------	--	--	--	--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	남	金洵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어인(朴子尹)	1968년 02월 02일	680202-2*****	여	博仁
자녀	김일순(金一洵)	1990년 01월 01일	900101-2*****	여	金洵
자녀	김장민(金上巖)	2003년 02월 01일	030201-3*****	남	金洵

위 가족관계증명서(특정)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자정보중앙관리소 전자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간 : 17시 01분
신청인 : 김본인

발행번호 : 0000-0000-0000-0000 1 / 1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처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주민등록등본

문서확인번호 : 1679-6944- [] 1/1

주민등록표 (등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전화: 02-3423-7520
신청인: []
출도 및 목적: [] 2023년 08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세대주 성명(원자)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전입 2 []	발생일 / 신고일	변동 사유
주소	[]			2017-05-10	2017-05-10
원주소	서울특별시 []				전입
== 공란 ==					
번호	세대주 성명(원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발생일 / 신고일	등록상태	변동사유
1	본인	[]	2017-05-10	2017-05-10	전입
			거주자		
== 이하 여백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부 사회성과의 정의

제2부 사회성과 측정개요

제3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부록 별첨

(44)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인정 증명규칙 (내무부 제2019-12호) <개정 2019. 12. 30.>

증서번호 Certificate No.

난민인정증명서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성명 : _____
Full Name

생년월일 : _____
Date of Birth

국적 : _____
Nationality

사진
PHOTO
3.5cmx4.5cm

귀하는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Pursuant of Article 18(1) of the Refugee Act,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recognized as a refugee.

주요사항 (중요사항)

난민인정이 취소·말퇴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returned immediately whe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cancelled/withdrawn or as Exit Order has been issued.

년 월 일
yyy mm dd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Embassy/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직인
Official Seal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2100002019123001(Signart)

(45)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신청자 연락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련사항	보호종료 기관명	보호종료 기관 유형	
	기관주소	기관 연락처	
	임소일(위탁보호일)	퇴소일(위탁종료일)	
담당자 연락사항	성명	소속	직위

위 사람은 보호종료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4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확인서

(양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 안내
1. 신청인					
대상 아동	성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입류방지홍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대리인	성명		대상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문자 메시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2. 보호기관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명 (위탁부모)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보호기관(위탁가정) 주소					
E-mail				보호구분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호구분 기타사유					
*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는 최종 보호 종료원 아동복지법 상 시설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만 작성)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연락처, 주민등록정보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위와 같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7)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서식6> 청소년쉼터 입소기간확인서

발행번호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청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발급일 기준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쉼터명	쉼터유형	입소일자	퇴소일자	퇴소사유	입소기간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입소기간 계					
○ 발급일 기준 과거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의 합계 : ○년 ○개월 ○일						
* 쉼터 퇴소청소년은 최근 퇴소일 기준						
용 도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신청					
제출처	시장 또는 군수(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시 설 명						(직인)
주 소 :						
연락처 :			담당자 :			
대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가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 - 단, 자립지원수령, 공공임대 주택 대상이 되지 않아 시스템으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수기 발급 * 입소 기간은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기간만을 인정(입·퇴소 없이 사례관리한 기간은 제외) - 쉼터 죽과 협의 없이 또는 강제 퇴소한 경우 해당 쉼터의 입소기간 불인정(무단퇴소 등) - 정상 퇴소 후 3일 이내 타 쉼터에 재입소한 경우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 가정사회복지, 기간연보, 지원, 가족학교 입학, 타시별 연계, 군립대·임원 및 기타 협의에 따른 퇴소 * 기간계산 :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을 따르며, '공무분보수 등의 업무지침(연사학신지 예규)의 '경력기간의 계산' 방식을 준용 						

(48) 신용등급조회서류

신용점수 953점
변동없음 (04.14 대비) >

조회내역 2건 > 상위 18% 변동내역 4건 >

신용점수 올리기

카드 (3월) > 대출 > 연체 0원 >

신용점수 올리기

나의 가산점 16점
카카오뱅크 신용점수 올리기

최근 서류제출 : 2020.10.24
최근 6개월 내 다른 KCB 제휴 서비스를 통한 서류 제출 결과가 모두 포함된 점수입니다.

서류 다시 제출하기

카카오뱅크 '신용점수 올리기'는 신용평가사(KCB)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용점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류제출 가능시간 : 매일 (365일) 08시~22시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된 서류를 KCB로 제출)
- 최근 6개월 내 다른 KCB 제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미 가산점이 반영되어 신용점수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사 및 내부 기준에 따라 가산점만큼 내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확인

(49) 조치결정통보서

<양식 3-5>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 사안번호: [redacted]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구 분	소속 학교	학년/반	성명
피해학생	[redacted]	3학년	[redacted]
가해학생	[redacted]	3학년	[redacted]

조치원인: 9월 3일~9월 7일 학교 일과 중 3층 화장실 일 복도에서 [redacted] 학생이 [redacted] 학생을 불리 음부를 한 차례 면쳤다고 하나 양측의 다른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음.

자치위원회 개최: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1월 [redacted]

조치사항	피해 학생		학 생	조치사항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학부모		
				"중거 불충분"으로 "조치결정 없음."
				"중거 불충분"으로 "조치결정 없음."
				"중거 불충분"으로 "조치결정 없음."

재심 안내: 피해학생: 조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의2 제1항)

가해학생: 전학 또는 퇴학조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정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의2 제2항)

불복절차 안내: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redacted])

2019. 1. 23. [redacted]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물 피·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반드시 「지역위원회 통지(유형 발송)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1)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 관련 칸을 추가하여 모든 가해학생 조치결과에 대해 통지하고 2) 가해학생에게는 위 양식을 활용하여 피해학생의 조치결과와 본인의 조치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

3. 외부공정성과

1) 소농과의 (농산물) 거래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거래대상의 소농 증명 자료	필수	• 농가소득자료, 거래 농가 정보	• 소농기준, 경작면적(2ha미만) 및 연소득(3천만원 이하) 기준 •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내 농가 중 소농비율 적용
거래 내역 및 거래액 증빙자료	필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등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예시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0. 8. 25.> (일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성명		생년월일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포함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미포함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법인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포함 [], 미포함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필지수	농지 등 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경작	휴경	폐경	
6. 임야 및 임업경영	필지수	임야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경작	휴경	폐경	
7.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사육시설 소재지수	사육시설 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 관련 정보 현황	직불금 정보 있음 [], 없음 []		정부보조·융자금 정보 있음 [], 없음 []		친환경 등 인증정보 있음 [], 없음 []	
	교육이수 정보 있음 [], 없음 []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정보 있음 [], 없음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있음 [], 없음 []	
위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직인</div>						
<p>*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러 14일 이내에 등록 관할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등록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p> <p>*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p> <p>*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p> <p>*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는 산림청 담당으로 등록 정보에 관한 문의는 경영주 농업인 주소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5~8 항목은 등록정보가 있을 경우 표시되며, 상세정보는 뒤쪽의 항목별 상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등록 변경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등록 변경등록일부러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갱신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복합지 80g/㎡)</p>						

(2)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예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작성일자: 2021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출력일자: 2022년 2월 15일 페이지: 1

공급받는자 인적 사항					
사업자번호		통신통계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건, 원)					
총건수	1	총합계금액	2,178,000	총 공급가액	1,980,000
		총 세액		총 세액	198,000

일련번호	작성일자	승인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자세금계산서종류
	발급일자	전송일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발급유형
1						

2~3) 공정무역 - 농산물, 비농산물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거래내역 증빙자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전체 거래 내역 • 해외거래서류(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해외송금확인증 등) 	
거래처 취약성 증명 자료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공정무역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저개발국가 또는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에 기반해 거래하는 저개발국가의 취약한 농업생산자/영세소상공인

(1) 인보이스 예시

PROFORMA INVOICE

Messrs: LIMITED LTD.

Attn: Mr. [Redacted]

C.C: [Redacted]

Ref. No.: [Redacted]

From: Date: Apr. 27, 2016

Dear Sir,

We are pleased to quote the under-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 SCOPE OF SUPPLY <Unit: USD>					
NO	SPECIFICATION	UNIT	Q'TY	UNIT PRICE	AMOUNT
1.	[Redacted]	EA	2	240.00	480.00
					USD 480.00

■ TERMS AND CONDITIONS

- > Packing :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
- > Shipment : Approx. 2 days after receipt payment
- > Terms of Price : FOB Korea
- > Payment : T/T advanced
- > Advising Bank : Industrial Bank of Korea, z
- > Our Account No : 081-*****00018
- > Validity : 30 Days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we are,
Yours faithfully,

SEVONWORLD CO., LIMITED

IM
LTD.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거래내역 증빙자료	필수	• 연간 전체 거래 내역 • 관련 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처 취약성 증명 자료	필요시		• (해외) 대상지역: 저개발국-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 참고: https://data.worldbank.org/?locations=XN-XM • (국내) 지역의 경제 현황 및 관광실태의 취약성을 검토하여 인정함 측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공정여행 사례-제주생태관광/공감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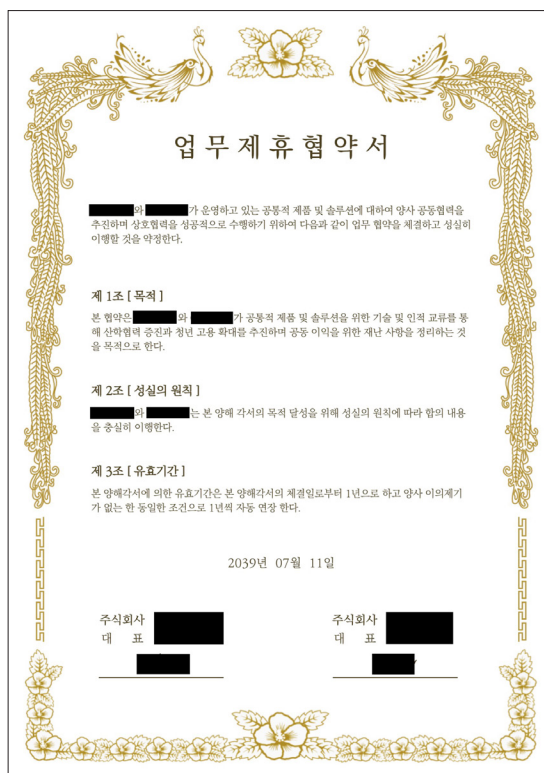
5)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크라우드펀딩 증빙자료	필수	• 크라우드펀딩 리스트 및 모금액, 펀딩수수료 비율, 외부지원금(참여기업별 정산서 및 계산서 등)	• 측정기관의 '공익성 검토 기준'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별 성과 인정여부 달라질 수 있음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대상자 적합성 및 관계성을 증명하는 자료	필수	• 창업 지원 사업 내용, 신규 조직 형성 기여활동 자료 등
창업 조직 증명 자료	필수	• 재무제표 및 고용 현황 자료 등

(1) 대상자 관계성 증명 예시(업무협약서)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거래내역 증빙자료	필수	• 연간 거래 내역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처 취약성 증명 자료	필요시	•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 세금계산서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11230-41000061-6wtvkda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주소	업태	이메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주소	업태	이메일
2021-12-30	19,600,000	1,960,000	취급사유	비고	2021-12-30	19,600,000	1,960,000	취급사유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30	방역물품커트	560세트	1	21,560,000	19,600,000	1,960,000		
합계금액		합금	수표	어음	와상미수금	이 금액을 (총) 환			
21,560,000					21,56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제3차 발급사실 조회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예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 업 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법인등록번호 : _____
 대표자명 : _____
 주 소 : _____
 주 업 종 : _____
 유효기간 : _____
 용 도 : _____

위 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발급사실 및 발급주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진흥정보시스템(tainfo.a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기간의 처분부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예시

(1 / 1)

발급번호 8211-984-9081-93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결정사업자 포함)		제외기간 주 시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간접업	종목	보통건축공사, 별 대계조정공사, 도시개발공사	
사업장	출산장면지 : (단위:평)			
과세기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원금받은 금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17/01/01	2017/06/30	0	0	0
2017/07/01	2017/12/31	0	0	0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번호 301020215864 2018년 4월 13일 담당 부서 인원홍사실 담당 자 김성수 연락처 052-219-9225 동산세무서장 (인)				

국세청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연간증명, 세외소득」 「연간증명 발급확인」 메뉴를 통해 용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 증명 발급일(2018.04.13)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은 「연간증명 발급확인」 메뉴를 통해 용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은 동해시(www.hometax.go.kr)에서 「연간증명, 세외소득」 「연간증명 발급확인」 메뉴를 통해 용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문화예술 자산보호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신진예술인 여부	필수	•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2년) (https://www.kawartist.kr/views/cms/hkor/cs/cs01006_/cs01006_05.jsp)
문화예술 관련 거래 내역 증빙자료	필수	•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판매확인서 등	• 신진예술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성과인정여부 달라질 수 있음(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활동증명' 및 소득인정액 제출 필요)

(1)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신진예술인)

발급번호	2021		
성명	장선일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지		
분야	연극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2021년 09월 17일 ~ 2023년 09월 16일		

위 사람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 및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정의된 예술인 정의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받은 권 없는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의 기준을 통해 선정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사례별 측정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측정기관과 사전 논의 후 제출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사례별 측정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측정기관과 사전 논의 후 제출

4. 환경성과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기업의 미션	필수	정관	• 정관상 '환경', '건강', '지역사회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과 사회를 위해 힘쓴다는 의미의 문구가 소설미션 또는 사업범위로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측정
제품의 효과성	권장	연구논문, 시험성적서, 자체 실험data 등	• 더 정확한 지표 측정 위함 • 기준정보 부재시 필수로 요구할 수 있음
제품의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내역 통해 환경성과 측정
해외수출입 내역	해당자	수입신고필증 해외수출실적증명	• 해외로 거래 시 제출
구독서비스/ 온라인 등 이용률	해당자	시스템 출력값(엑셀)	• 엑셀파일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나, 증빙방법이 그 이상으로 존재하지 않을 시, 최대한 구체적, 일관적으로 출력/작성된 파일만 제한적 인정

1) 정관

제 2 조 (목적)
<p>본 회사는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대응'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과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또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계적 환경문제인 페타이어의 적체문제 및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p> <p>1. 의류잡화 도소매업 1. 의류잡화 제조업 1. 의류잡화 수출입업 1.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p>

2)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0131-10000000-27783022				
등록번호	통시업종번호	등록번호	통시업종번호	등록번호	통시업종번호	등록번호	통시업종번호	통시업종번호	통시업종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비고					
2020-01-31	1,250,000	125,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1	14	초평 2.5mm	kg	200	6,000	1,200,000	120,000		
01	14	배송비	마태	10	5,000	50,000	5,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1,375,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차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엑셀파일

자원	단위	총 실적	자원	종류
캔	무게(kg)	544,977.54	캔	알루미늄 캔
	개수(개)	27,249,721		철 캔
페트	무게(kg)	1,633,052.87		
	개수(개)	81,753,163		
합계	무게(kg)	2,177,954.76		
	개수(개)	108,995,684		
적립포인트		1,102,147,862		

1. 수도권

구분	합계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	
적립 포인트	363,714,439	17,437,380	20,445,561	18,116,363	8,446,957	1,848,520	
캔	무게(Kg)	188,110	7,094.24	8,621.94	4,368.88	3,566.18	778.14
	개수(개)	9,405,481	354,712	431,097	218,444	178,309	38,907
페트	무게(Kg)	671,625	29,482.57	34,469.28	34,610.45	13,813.31	2,945.28
	개수(개)	33,581,221	1,474,129	1,723,463	1,730,523	690,665	147,264
합계	무게(Kg)	859,514	36,576.81	43,091.22	38,979.33	17,379.49	3,723.42
	개수(개)	42,975,695	1,828,841	2,154,560	1,948,967	868,974	186,171

2. 강원/충청권

구분	합계	삼척시	양구군	원주시	춘천시	강원 한림대	
적립 포인트	278,398,105	173,886,783	5,967,796	14,552,235	78,892,321	3,755,830	
캔	무게(Kg)	126,211	76,349.48	4,118.06	12,568.40	31,023.58	1,218.56
	개수(개)	6,310,527	3,817,474	205,903	628,420	1,551,179	60,928
페트	무게(Kg)	235,322	108,195.33	8,617.50	16,997.06	95,546.30	4,206.60
	개수(개)	11,766,084	5,409,767	430,875	849,853	4,777,316	210,330
합계	무게(Kg)	361,532	184,544.81	12,735.56	29,565.46	126,569.88	5,425.16
	개수(개)	18,076,611	9,227,241	636,778	1,478,273	6,328,495	271,258

제1부
사회성과의 정의

제2부
사회성과 측정개요

제3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부록
별첨

기획

권순범 SPC팀장 겸 책임연구원 (sbkwon@cses.re.kr)

김소예 연구원 (sy0219@cses.re.kr)

이한결 연구원

저자

김소예 연구원 (sy0219@cses.re.kr)

이한결 연구원

김지현 선임연구원 (jhkim@cses.re.kr)

김보영 선임연구원 (daisykim@cses.re.kr)

고현창 연구원 (sunnysoc.imp@cses.re.kr)

여미영 책임연구원 (myyeo@cses.re.kr)

정종덕 책임연구원 (jung@cses.re.kr)

박혜수 선임연구원 (phsphs08@cses.re.kr)

박정은 선임연구원 (jepark@cses.re.kr)

김성은 선임연구원 (kse@cses.re.kr)

권순범 SPC팀장 겸 책임연구원 (sbkwon@cses.re.kr)

디자인·출판

내일날씨

발행

초판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 측정』 라준영, 김수진, 박성훈 2016년 9월

제1개정판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 측정 매뉴얼』 라준영, 김수진, 정소민, 박성훈 2017년 11월

제2개정판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매뉴얼』 2024년 2월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매뉴얼 참여기업용 개요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매뉴얼 참여기업용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실과 기업들의 솔루션이 다종다양해짐에 따라 객관적인 측정 기준과 체계를 제시하고자 고민했던 노력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스스로 탐색하기 용이하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개정판이 사회성과 측정과 확산의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MPRINT

발행처 사회적가치연구원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인 나석권

CONTACT INFORMATION

주소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8층

Tel 02-6275-0410

Fax 070-5176-4269

E-mail info@cses.re.kr

홈페이지 <https://www.cses.re.kr/>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